운정 아이파크 시티 입주자모집공고(정정공고)

※ 2025.10.24.(금)의 내용 중 일부를 2025.10.29.(수)일자로 아래와 같이 정정공고 합니다.

청약Home | 구글플레이스토어 |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변경 내용[39Page]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 협의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 협의 조건에 의거 계약금 **5%**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변경 내용[47Page]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중 빌트인 가전

변경 전

적용품목	주택형	구성 및 모델	판매가	제조사	비고
빌트인 냉장고	63	M62BAAA332+수납장	4,200,000	LG전자	
	113, 152-P, 171-P, 192-P, 197-P		4,900,000		
	74, 84A, 84B, 84C, 99	M62BAAA332+판넬	3,900,000		
	전타입	M62BAAA332(4도어냉장)+Z334AAA151(3도어김치냉장)	6,200,000		Fit&Max
	63, 84B, 84C	BC1L4AA+BC1F4AA+수납장	4,000,000		
	152-P, 171-P, 192-P, 197-P		4,500,000		
	74, 84A, 99, 113	BC1L4AA+BC1F4AA+판넬	3,700,000		
	전타입	BC1L4AA(냉장)+BC1F4AA(냉동)+BC1K4AA(김치냉장)	6,400,000		Fit&Max / 서랍장 제공

변경 후

적용품목	주택형	구성 및 모델	판매가	제조사	비고
빌트인 냉장고	63	M62BAAA332+수납장	4,200,000	LG전자	
	113, 152-P, 171-P, 192-P, 197-P		4,900,000		
	74, 84A, 84B, 84C, 99	M62BAAA332+판넬	3,900,000		
	전타입	M62BAAA332(4도어냉장)+Z334AAA151(3도어김치냉장)	6,200,000		Fit&Max
	63, 84B, 84C	BC1L4AA+BC1F4AA+수납장	4,000,000		
	152-P, 171-P, 192-P, 197-P		4,500,000		
	74, 84A, 99, 113	**BC1L4AA+BC1F4AA**	**3,500,000**		
	전타입	BC1L4AA(냉장)+BC1F4AA(냉동)+BC1K4AA(김치냉장)	6,400,000		**Fit&Max**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입주자모집공고일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660-3255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입주자모집공고일(2025.10.24.) 현재 파주시 거주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5.10.24.) 현재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6개월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5.10.24.(금)	2025.11.03.(월)	2025.11.04.(화)	2025.11.05.(수)	2025.11.12.(수)	2025.11.14.(금) ~ 2025.11.19.(수)	2025.11.25.(화) ~ 2025.11.28.(금)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정 아이파크 시티 견본주택」 내 분양 상담전화(☎1660-3255)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06.3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 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파주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철거주택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자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	적용	-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개발사업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 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인터넷 홈페이지(**https://unjeong-iparkcity.com**)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상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2025.10.24.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주택법」제65조 및「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주택법」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아파트 공급을 위한 주요내용을 표기한 것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련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주택법」,「주택법 시행령」등 제반 법령이 우선합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APT	O	O	O	O	O	O	O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개정된 내용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본 아파트 공급계약서 및 발코니확장 계약서는「인지세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계약서 또한「인지세법」상 '도급문서'로서 인지세 납부대상으로「인지세법」제1조에 의거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며, 공급계약 및 발코니확장 체결 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입주예정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균등납부 하기로 합니다. 또한, 분양계약자(입주예정자)가 분담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입주예정자)에게 있습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세액 :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 + 프리미엄)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2022.12.31.개정된「인지세법」제8조 제3항에 따라 공급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 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10.24.(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파주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5.11.03.(월)**	**2025.11.04.(화)**	**2025.11.05.(수)**	**2025.11.12.(수)**	**2025.11.14.(금)~2025.11.19.(수)**	**2025.11.25.(화)~2025.11.28.(금)**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 사업주체 견본주택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PC·모바일) 청약홈	▪ 사업주체 견본주택 (주소: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390)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지역(수도권) 거주 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은 불가함)

■ 2021.02.02.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9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분은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부동산 거래의 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

해당 주택건설지역(파주시)은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실제 거래가격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2025.11.12.)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6개월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파주시 주택과-44416호(2025.10.24.)**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파주메디컬클러스터 도시개발구역 A2BL (경기도 파주시 서패동 432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9층 25개동 총 3,25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1,444세대(철거주택 소유자 3세대, 기관추천 243세대, 다자녀가구 324세대, 신혼부부 560세대, 노부모부양자 96세대, 생애최초 218세대) 포함]

■ **입주시기** : **2028년 1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전체 공급대상**

(단위: ㎡,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철거주택 소유자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자	생애 최초	계		
2025000487	01	063.8043	63	63.8043	20.2371	84.0414	50.8107	134.8521	34.6371	243	-	24	24	56	7	22	133	110	10
	02	074.9086	74	74.9086	23.5252	98.4338	59.6537	158.0875	40.6652	294	-	29	29	68	8	26	160	134	11
	03	084.5227A	84A	84.5227	25.2499	109.7726	67.3099	177.0825	45.8844	1,300	3	130	130	299	39	117	718	582	50
	04	084.8855B	84B	84.8855	26.3088	111.1943	67.5988	178.7931	46.0813	311		31	31	71	9	27	169	142	12
	05	084.9890C	84C	84.9890	27.3364	112.3254	67.6812	180.0066	46.1375	286		29	29	66	8	26	158	128	10
	06	099.3062	99	99.3062	28.9971	128.3033	79.0828	207.3861	53.9098	415	-	-	42	-	13	-	55	360	16
	07	113.6508	113	113.6508	34.1518	147.8026	90.5063	238.3089	61.6970	394	-	-	39	-	12	-	51	343	19
	08	152.5880P	152-P	152.5880	48.0786	200.6666	121.5140	322.1806	82.8346	1	-	-	-	-	-	-	-	1	-
	09	171.7503P	171-P	171.7503	52.7299	224.4802	136.7741	361.2543	93.2371	3	-	-	-	-	-	-	-	3	-
	10	192.7418P	192-P	192.7418	64.4324	257.1742	153.4907	410.6649	104.6326	1	-	-	-	-	-	-	-	1	-
	11	197.1512P	197-P	197.1512	65.2923	262.4435	157.0023	419.4458	107.0263	2	-	-	-	-	-	-	-	2	-
합 계										**3,250**	**3**	**243**	**324**	**560**	**96**	**218**	**1,444**	**1,806**	**128**

- 주택형 구분은 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카탈로그,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 바랍니다.
- 주택형 표기방식은 종전(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3.3058)
- 상기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기되어,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전체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과의 합계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등기를 위해 소수점 자리의 표기 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소수점 이하의 면적변동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음)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세대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은 외벽면적과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외벽면적 제외)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외벽면적 제외)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공급면적(근린생활시설의 공급면적은 공동주택 공급면적 산정기준 적용)을 기준으로 산정 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 시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공부정리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증감 비율이 허용오차범위 내에서 변동될 경우 별도 정산을 하지 않기로 하며, 허용하는 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 상의 면적 차이에 대하여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상호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 실 대지의 측량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건축허가 변경 및 신고, 성능 개선을 위한 설계변경 등에 따라 본 계약건물의 견본주택, 건축물의 배치구조, 단지 내 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보강토 블록, 조경용 석축 등 포함)의 형태 및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및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평형, 계약면적 등이 계약 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거공용공간,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조경공간, 단지 내/외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비상차량 동선 등) 등은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공용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층·향·호별 구분 없이 접수하여 관계 법령 등에 의거하여 호수가 배정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구분 (약식표기)			63	74	84A	84B	84C	99	113	합 계
철거주택 소유자			-	-	3	-	-	-	-	3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등		3	4	17	4	4	-	-	32
	장기복무 제대군인		3	4	17	4	4	-	-	32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3	4	17	4	4	-	-	32
	중소기업 근로자		3	4	17	4	4	-	-	32
	장애인	경기도	6	7	33	8	7	-	-	61
		서울특별시	4	4	20	5	4	-	-	37
		인천광역시	2	2	9	2	2	-	-	17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경기도 거주자(50%)		12	15	65	16	15	21	20	164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50%)		12	14	65	15	14	21	19	160
신혼부부 특별공급			56	68	299	71	66	-	-	560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7	8	39	9	8	13	12	96
생애최초 특별공급			22	26	117	27	26	-	-	218
합 계			**133**	**160**	**718**	**169**	**158**	**55**	**51**	**1,444**

•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전체 공급세대수 및 비율 등을 고려하여 배정하였으며, 특별공급 세대가 배정되지 않은 주택형에 대해서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약식 표기	동별 라인별	층구분	공급 세대 수	공급금액				계약금 (5%)		중도금 (60%)						잔금 (35%)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계	계약시	계약후 1개월이내	1차(10%) 2026.07.07	2차(10%) 2026.12.07	3차(10%) 2027.05.07	4차(10%) 2027.09.07	5차(10%) 2027.12.07	6차(10%) 2028.06.07	입주 지정기간
63	204동 1,2호, 205동 1,2호, 211동 1,2호, 220동 1,2,3,4호	1층	5	205,178,769	217,121,231	-	422,300,000	10,000,000	11,115,000	42,230,000	42,230,000	42,230,000	42,230,000	42,230,000	42,230,000	147,805,000
		2층	10	212,223,742	224,576,258	-	436,800,000	10,000,000	11,840,000	43,680,000	43,680,000	43,680,000	43,680,000	43,680,000	43,680,000	152,880,000
		3~5층	30	219,268,716	232,031,284	-	451,300,000	10,000,000	12,565,000	45,130,000	45,130,000	45,130,000	45,130,000	45,130,000	45,130,000	157,955,000
		6~10층	50	223,981,560	237,018,440	-	461,000,000	10,000,000	13,050,000	46,100,000	46,100,000	46,100,000	46,100,000	46,100,000	46,100,000	161,350,000
		11~20층	100	228,645,818	241,954,182	-	470,600,000	10,000,000	13,530,000	47,060,000	47,060,000	47,060,000	47,060,000	47,060,000	47,060,000	164,710,000
		21층 이상	48	235,739,377	249,460,623	-	485,200,000	10,000,000	14,260,000	48,520,000	48,520,000	48,520,000	48,520,000	48,520,000	48,520,000	169,820,000
74	206동 3호, 207동 1,2호, 208동 1,2호, 217동 1,2호, 218동 1,2호, 219동 1,2호	1층	4	242,978,694	257,121,306	-	500,100,000	10,000,000	15,005,000	50,010,000	50,010,000	50,010,000	50,010,000	50,010,000	50,010,000	175,035,000
		2층	9	251,335,490	265,964,510	-	517,300,000	10,000,000	15,865,000	51,730,000	51,730,000	51,730,000	51,730,000	51,730,000	51,730,000	181,055,000
		3~5층	33	259,643,700	274,756,300	-	534,400,000	10,000,000	16,720,000	53,440,000	53,440,000	53,440,000	53,440,000	53,440,000	53,440,000	187,040,000
		6~10층	55	265,231,092	280,668,908	-	545,900,000	10,000,000	17,295,000	54,590,000	54,590,000	54,590,000	54,590,000	54,590,000	54,590,000	191,065,000
		11~20층	110	270,769,898	286,530,102	-	557,300,000	10,000,000	17,865,000	55,730,000	55,730,000	55,730,000	55,730,000	55,730,000	55,730,000	195,055,000

약식 표기	동별 라인별	층구분	공급 세대 수	공급금액				계약금 (5%)		중도금 (60%)						잔금 (35%)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계	계약시	계약후 1개월이내	1차(10%) 2026.07.07	2차(10%) 2026.12.07	3차(10%) 2027.05.07	4차(10%) 2027.09.07	5차(10%) 2027.12.07	6차(10%) 2028.06.07	입주 지정기간
		21층 이상	83	279,126,694	295,373,306	-	574,500,000	10,000,000	18,725,000	57,450,000	57,450,000	57,450,000	57,450,000	57,450,000	57,450,000	201,075,000
84A	202동 1,2,3호, 203동 1,2,3호, 204동 3호, 205동 3호 207동 3,5,6호, 208동 3호, 209동 1,2,3호, 210동 1,2,3호, 211동 4,5,6호, 212동 1,2,3호, 214동 1,2,3호, 215동 1,2,3,5호, 216동 1,2,3,5호, 217동 3,5호, 218동 4호, 219동 3,5호, 222동 1,3호, 223동 1,3,4,5호, 224동 1,3호, 225동 1,3호	1층	17	276,503,049	292,596,951	-	569,100,000	10,000,000	18,455,000	56,910,000	56,910,000	56,910,000	56,910,000	56,910,000	56,910,000	199,185,000
		2층	49	286,025,909	302,674,091	-	588,700,000	10,000,000	19,435,000	58,870,000	58,870,000	58,870,000	58,870,000	58,870,000	58,870,000	206,045,000
		3~5층	150	295,500,184	312,699,816	-	608,200,000	10,000,000	20,410,000	60,820,000	60,820,000	60,820,000	60,820,000	60,820,000	60,820,000	212,870,000
		6~10층	250	301,816,366	319,383,634	-	621,200,000	10,000,000	21,060,000	62,120,000	62,120,000	62,120,000	62,120,000	62,120,000	62,120,000	217,420,000
		11~20층	490	308,181,135	326,118,865	-	634,300,000	10,000,000	21,715,000	63,430,000	63,430,000	63,430,000	63,430,000	63,430,000	63,430,000	222,005,000
		21층 이상	344	317,655,409	336,144,591	-	653,800,000	10,000,000	22,690,000	65,380,000	65,380,000	65,380,000	65,380,000	65,380,000	65,380,000	228,830,000
84B	202동 4호, 204동 4호, 205동 4호, 206동 4호, 210동 4호, 211동 3호, 212동 4호, 213동 3호(2~10층), 215동 4호, 216동 4호, 219동 4호, 224동 2호	1층	9	274,462,436	290,437,564	-	564,900,000	10,000,000	18,245,000	56,490,000	56,490,000	56,490,000	56,490,000	56,490,000	56,490,000	197,715,000
		2층	12	283,888,124	300,411,876	-	584,300,000	10,000,000	19,215,000	58,430,000	58,430,000	58,430,000	58,430,000	58,430,000	58,430,000	204,505,000
		3~5층	36	293,313,813	310,386,187	-	603,700,000	10,000,000	20,185,000	60,370,000	60,370,000	60,370,000	60,370,000	60,370,000	60,370,000	211,295,000
		6~10층	60	299,581,409	317,018,591	-	616,600,000	10,000,000	20,830,000	61,660,000	61,660,000	61,660,000	61,660,000	61,660,000	61,660,000	215,810,000
		11~20층	110	305,849,006	323,650,994	-	629,500,000	10,000,000	21,475,000	62,950,000	62,950,000	62,950,000	62,950,000	62,950,000	62,950,000	220,325,000
		21층 이상	66	315,274,694	333,625,306	-	648,900,000	10,000,000	22,445,000	64,890,000	64,890,000	64,890,000	64,890,000	64,890,000	64,890,000	227,115,000
	213동 3호(11층 이상)	11~20층	10	315,274,694	333,625,306	-	648,900,000	10,000,000	22,445,000	64,890,000	64,890,000	64,890,000	64,890,000	64,890,000	64,890,000	227,115,000
		21층이상	8	324,991,899	343,908,101	-	668,900,000	10,000,000	23,445,000	66,890,000	66,890,000	66,890,000	66,890,000	66,890,000	66,890,000	234,115,000
84C	203동 4호, 207동 4호, 208동 4호, 209동 4호, 214동 4호, 217동 4호, 218동 3호, 222동 2호, 223동 2호, 225동 2호	1층	9	280,244,173	296,555,827	-	576,800,000	10,000,000	18,840,000	57,680,000	57,680,000	57,680,000	57,680,000	57,680,000	57,680,000	201,880,000
		2층	10	289,864,205	306,735,795	-	596,600,000	10,000,000	19,830,000	59,660,000	59,660,000	59,660,000	59,660,000	59,660,000	59,660,000	208,810,000
		3~5층	30	299,484,237	316,915,763	-	616,400,000	10,000,000	20,820,000	61,640,000	61,640,000	61,640,000	61,640,000	61,640,000	61,640,000	215,740,000
		6~10층	50	305,897,592	323,702,408	-	629,600,000	10,000,000	21,480,000	62,960,000	62,960,000	62,960,000	62,960,000	62,960,000	62,960,000	220,360,000
		11~20층	100	312,310,947	330,489,053	-	642,800,000	10,000,000	22,140,000	64,280,000	64,280,000	64,280,000	64,280,000	64,280,000	64,280,000	224,980,000
		21층 이상	87	321,930,979	340,669,021	-	662,600,000	10,000,000	23,130,000	66,260,000	66,260,000	66,260,000	66,260,000	66,260,000	66,260,000	231,910,000
99	206동 1,2호, 208동 5,6호, 209동 5,6호, 212동 5호(2~10층) 212동 6호(1~10층) 221동 1,2,3,4호, 222동 4,5호, 224동 4,5호	1층	8	308,086,594	324,557,642	32,455,764	665,100,000	10,000,000	23,255,000	66,510,000	66,510,000	66,510,000	66,510,000	66,510,000	66,510,000	232,785,000
		2층	16	318,647,974	335,683,660	33,568,366	687,900,000	10,000,000	24,395,000	68,790,000	68,790,000	68,790,000	68,790,000	68,790,000	68,790,000	240,765,000
		3~5층	48	329,255,677	346,858,475	34,685,848	710,800,000	10,000,000	25,540,000	71,080,000	71,080,000	71,080,000	71,080,000	71,080,000	71,080,000	248,780,000
		6~10층	80	336,296,598	354,275,820	35,427,582	726,000,000	10,000,000	26,300,000	72,600,000	72,600,000	72,600,000	72,600,000	72,600,000	72,600,000	254,100,000
		11~20층	139	343,337,518	361,693,165	36,169,317	741,200,000	10,000,000	27,060,000	74,120,000	74,120,000	74,120,000	74,120,000	74,120,000	74,120,000	259,420,000

약식 표기	동별 라인별	층구분	공급 세대 수	공급금액				계약금 (5%)		중도금 (60%)						잔금 (35%)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계	계약시	계약후 1개월이내	1차(10%) 2026.07.07	2차(10%) 2026.12.07	3차(10%) 2027.05.07	4차(10%) 2027.09.07	5차(10%) 2027.12.07	6차(10%) 2028.06.07	입주 지정기간
		21층 이상	88	353,945,221	372,867,981	37,286,798	764,100,000	10,000,000	28,205,000	76,410,000	76,410,000	76,410,000	76,410,000	76,410,000	76,410,000	267,435,000
	212동 5,6호(11층 이상)	11~20층	20	353,945,221	372,867,981	37,286,798	764,100,000	10,000,000	28,205,000	76,410,000	76,410,000	76,410,000	76,410,000	76,410,000	76,410,000	267,435,000
		21층 이상	16	364,830,854	384,335,587	38,433,559	787,600,000	10,000,000	29,380,000	78,760,000	78,760,000	78,760,000	78,760,000	78,760,000	78,760,000	275,660,000
113	201동 1호 (1~10층), 201동 2호 (2~10층), 202동 5호 (2~10층), 202동 6호 (1~10층), 203동 5,6호, 204동 5,6호, 205동 5,6호, 206동 5,6호, 210동 5,6호, 213동 1,2호, 213동 4호 (2~10층), 214동 5,6호	1층	8	358,577,406	377,747,813	37,774,781	774,100,000	10,000,000	28,705,000	77,410,000	77,410,000	77,410,000	77,410,000	77,410,000	77,410,000	270,935,000
		2층	19	370,899,016	390,728,167	39,072,817	800,700,000	10,000,000	30,035,000	80,070,000	80,070,000	80,070,000	80,070,000	80,070,000	80,070,000	280,245,000
		3~5층	57	383,220,627	403,708,521	40,370,852	827,300,000	10,000,000	31,365,000	82,730,000	82,730,000	82,730,000	82,730,000	82,730,000	82,730,000	289,555,000
		6~10층	95	391,419,594	412,345,824	41,234,582	845,000,000	10,000,000	32,250,000	84,500,000	84,500,000	84,500,000	84,500,000	84,500,000	84,500,000	295,750,000
		11~20층	114	399,618,560	420,983,127	42,098,313	862,700,000	10,000,000	33,135,000	86,270,000	86,270,000	86,270,000	86,270,000	86,270,000	86,270,000	301,945,000
		21층 이상	42	411,940,171	433,963,481	43,396,348	889,300,000	10,000,000	34,465,000	88,930,000	88,930,000	88,930,000	88,930,000	88,930,000	88,930,000	311,255,000
	201동 1,2호 (11층 이상), 202동 5,6호 (11층 이상), 213동 4호 (11층 이상)	11~20층	50	411,940,171	433,963,481	43,396,348	889,300,000	10,000,000	34,465,000	88,930,000	88,930,000	88,930,000	88,930,000	88,930,000	88,930,000	311,255,000
		21층 이상	9	424,586,035	447,285,423	44,728,542	916,600,000	10,000,000	35,830,000	91,660,000	91,660,000	91,660,000	91,660,000	91,660,000	91,660,000	320,810,000
152-P	211동 6호(29층)	21층 이상	1	647,440,433	682,054,152	68,205,415	1,397,700,000	10,000,000	59,885,000	139,770,000	139,770,000	139,770,000	139,770,000	139,770,000	139,770,000	489,195,000
171-P	212동 6호(29층), 221동 4호(28층), 224동 5호(29층)	21층 이상	3	724,612,627	763,352,157	76,335,216	1,564,300,000	10,000,000	68,215,000	156,430,000	156,430,000	156,430,000	156,430,000	156,430,000	156,430,000	547,505,000
192-P	214동 5호(29층)	21층 이상	1	830,087,469	874,465,937	87,446,594	1,792,000,000	10,000,000	79,600,000	179,200,000	179,200,000	179,200,000	179,200,000	179,200,000	179,200,000	627,200,000
197-P	210동 5호(26층), 213동 2호(29층)	21층 이상	2	847,041,265	892,326,123	89,232,612	1,828,600,000	10,000,000	81,430,000	182,860,000	182,860,000	182,860,000	182,860,000	182,860,000	182,860,000	640,010,000

■ 주택형 표시 안내

입주자모집공고상(청약시) 주택형	063.8043	074.9086	084.5227A	084.8855B	084.9890C	099.3062	113.6508	152.5880P	171.7503P	192.7418P	197.1512P
약식표기	63	74	84A	84B	84C	99	113	152-P	171-P	192-P	197-P

• 주택형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유의사항**

- 본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서,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층별 등 여건에 따라 적정 조정하여 가격이 책정됩니다. 이에 따른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차이에 대한 이의는 제기할 수 없으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모두 인지세,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및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확장 공사비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미포함 금액이며,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별도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실, 경비실, 지하주차장, 전기/펌프실 등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리사무실, 경비실, 지하주차장, 전기/펌프실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하였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또한,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연체료가 발생함으로 유의바랍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 중 50% 공정 시점 이후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을 원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체결 후 지정된 대출 협약은행과 별도의 중도금대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 및 본인의 부적격 사유, 정부정책에 따른 대출제한, 대출기관의 대출 기준의 변경, 대출기관의 미확보 등으로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별도의 보상은 없습니다.(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
- 본 아파트의 중도금은 시행위탁사 또는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기관의 중도금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으나, 매수인 본인의 사유(보증제한, 신용불량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에 따른 공급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중도금대출기관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 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2차 계약금은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며(연체 시 연체료가 부과됨),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한 선납할인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로서,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분양계약자(입주예정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주민등록표등(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입주개시 전 특정 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방문 및 점검토록 할 예정입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합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 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에 적용된 단지 명칭,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사업주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는 편집, 인쇄 과정에서 착오 및 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신청 및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2025.06.27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및 2025.10.15.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따라 잔금대출에 대한 LTV 및 DSR 등의 규제가 강화되어 추후 입주에 따른 잔금대출 시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별 대출한도가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될 문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특별공급

[2025.03.3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혼인특례)	신혼부부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공급기준</td><td>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처리방법</th></tr>
<tr><td colspan="2">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td>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tr>
<tr><td rowspan="2">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td><td>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td><td>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td></tr>
<tr><td>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 청약한 경우</td><td>모두 부적격 처리</td></tr>
</tabl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td></tr>
<tr><td>무주택
요건</td><td>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철거주택 소유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td></tr>
<tr><td>청약통장
자격요건</td><td>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
<tr><th>구 분</th><th>파주시 및 경기도</th><th>인천광역시</th><th>서울특별시</th></tr>
<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200만원</td><td>250만원</td><td>3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02㎡ 이하</td><td>300만원</td><td>400만원</td><td>6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35㎡ 이하</td><td>400만원</td><td>700만원</td><td>1,000만원</td></tr>
<tr><td>모든면적</td><td>500만원</td><td>1,000만원</td><td>1,500만원</td></tr>
</table>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td></tr>
</table>

4-1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철거주택 소유자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4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 3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4조에 의거 특별공급대상자로 인정되어 **사업주체에게 통보한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 철거주택 소유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당첨자 선정방법	■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철거주택 소유자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자는 먼저 사업주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련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이주대책의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받은 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철거주택 소유자 특별공급 대상자는 사업주체에서 선정하는 최종 추천명단에 있는 자만 신청 가능하며, 사업주체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청약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해당 신청일에 최종 배정된 주택형으로 신청해야 하며, 타 주택형은 신청 불가합니다. ※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4-2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243세대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대상자</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td></tr>
<tr><td>추천기관</td><td>
<table>
<tr><th>구 분</th><th>관련 법규</th><th>해당 기관</th></tr>
<tr><td>국가유공자 등</td><td>「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td><td rowspan="2">국가보훈부 경기북부보훈지청 복지과</td></tr>
<tr><td>장기복무 제대군인</td><td>「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td></tr>
<tr><td>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td><td>「군인복지기본법」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td><td>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td></tr>
<tr><td>중소기업 근로자</td><td>「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제3조에 따른 같은 법의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td><td>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경기북부사무소)</td></tr>
<tr><td rowspan="3">장애인</td><td rowspan="3">「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td><td>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td></tr>
<tr><td>서울특별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td></tr>
<tr><td>인천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td></tr>
</table>
</td></tr>
<tr><td>당첨자 선정방법</td><td>■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td></tr>
</table>

4-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324세대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대상자</td><td>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 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기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에 따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td></tr>
<tr><td>당첨자
선정방법</td><td>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 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해당 시·도 거주자 50%(파주시 및 경기도 거주자) → 기타 수도권 거주자 50%(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 해당 시·도(파주시 및 경기도) 경쟁 발생시 해당 주택건설지역(파주시) 거주자를 우선하여 선정함.
※ 해당 시·도(파주시 및 경기도)에서 낙첨될 경우, 낙첨자는 나머지 50% 물량에서 기타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이 경우 거주자 우선공급은 적용하지 않음.
■ ②배점
<table>
<tr><th rowspan="2">배점항목</th><th rowspan="2">총배점</th><th colspan="2">배점기준</th><th rowspan="2">비고</th></tr>
<tr><th>기준</th><th>점수</th></tr>
<tr><td>계</td><td>100</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3">미성년 자녀수(1)</td><td rowspan="3">40</td><td>4명 이상</td><td>40</td><td rowspan="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td></tr>
<tr><td>3명</td><td>35</td></tr>
<tr><td>2명</td><td>25</td></tr>
<tr><td rowspan="3">영유아 자녀수(2)</td><td rowspan="3">15</td><td>3명 이상</td><td>15</td><td rowspan="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td></tr>
<tr><td>2명</td><td>10</td></tr>
<tr><td>1명</td><td>5</td></tr>
<tr><td rowspan="2">세대구성(3)</td><td rowspan="2">5</td><td>3세대 이상</td><td>5</td><td>-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td></tr>
<tr><td>한부모 가족</td><td>5</td><td>-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td></tr>
<tr><td rowspan="3">무주택기간(4)</td><td rowspan="3">20</td><td>10년 이상</td><td>20</td><td rowspan="3">-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td></tr>
<tr><td>5년 이상 ~ 10년 미만</td><td>15</td></tr>
<tr><td>1년 이상 ~ 5년 미만</td><td>10</td></tr>
<tr><td rowspan="3">해당 시·도 거주기간(5)</td><td rowspan="3">15</td><td>10년 이상</td><td>15</td><td rowspan="3">-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경기,서울,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td></tr>
<tr><td>5년 이상 ~ 10년 미만</td><td>10</td></tr>
<tr><td>1년 이상 ~ 5년 미만</td><td>5</td></tr>
<tr><td>입주자저축가입기간(6)</td><td>5</td><td>10년 이상</td><td>5</td><td>-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u>*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u></td></tr>
</table>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td></tr>
</table>

비고	**■ 자녀기준** - 이혼•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4-4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23% 범위 : 560세대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대상자</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td></tr>
<tr><td>당첨자
선정방법</td><td>■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①소득구분
<table>
<tr><th>단계</th><th>소득구분</th><th>내용</th></tr>
<tr><td>1단계</td><td>신생아 우선공급 (25%)</td><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tr>
<tr><td>2단계</td><td>신생아 일반공급 (10%)</td><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tr>
<tr><td>3단계</td><td>우선공급 (25%)</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tr>
<tr><td>4단계</td><td>일반공급 (10%)</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tr>
<tr><td>5단계</td><td>추첨공급</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
</table>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함.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파주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함.
■ ②순위
<table>
<tr><th>순위</th><th>내용</th></tr>
<tr><td>1순위</td><td>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td></tr>
<tr><td>2순위</td><td>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td></tr>
</table>
■ ③지역 :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 거주자 (파주시 거주자) → 모집공고일 현재 기타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td></tr>
<tr><td>비고</td><td>■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td></tr>
</table>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5.10.24.(금)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205,312원**	**~8,578,088원**	**~9,031,048원**	**~9,733,086원**	**~10,435,124원**	**~11,137,162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8,646,374원**	**~10,293,706원**	**~10,837,258원**	**~11,679,703원**	**~12,522,149원**	**~13,364,594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205,313원~ 10,087,437원**	**8,578,089원~ 12,009,323원**	**9,031,049원~ 12,643,467원**	**9,733,087원~ 13,626,320원**	**10,435,125원~ 14,609,174원**	**11,137,163원~ 15,592,02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8,646,375원~ 11,528,499원**	**10,293,707원~ 13,724,941원**	**10,837,259원~ 14,449,677원**	**11,679,704원~ 15,572,938원**	**12,522,150원~ 16,696,198원**	**13,364,595원~ 17,819,459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0,087,438원~**	**12,009,324원~**	**12,643,468원~**	**13,626,321원~**	**14,609,175원~**	**15,592,028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table>
<tr><th>구분</th><th>금액</th><th colspan="3">내용</th></tr>
<tr><td rowspan="2">부동산
(건물+토지)</td><td rowspan="2">3억3,100만원
이하</td><td>건축물</td><td colspan="2">-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table></td></tr>
<tr><td>토지</td><td colspan="2">-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td></tr>
</table>

4-5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96세대

구분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 파주시 거주자** → 모집공고일 현재 기타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

■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 직계존속(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에 따릅니다.

4-6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218세대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대상자</td><td>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운정 아이파크 시티'는 60㎡이하 주택형이 없으므로, 1인 가구 중 단독세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td></tr>
<tr><td>당첨자
선정방법</td><td>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table>
<tr><th>단계</th><th>소득구분</th><th colspan="2">내용</th></tr>
<tr><td>1단계</td><td>신생아 우선공급 (15%)</td><td colspan="2">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tr>
<tr><td>2단계</td><td>신생아 일반공급 (5%)</td><td colspan="2">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tr>
<tr><td>3단계</td><td>우선공급 (35%)</td><td colspan="2">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tr>
<tr><td>4단계</td><td>일반공급 (15%)</td><td colspan="2">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tr>
<tr><td rowspan="2">5단계</td><td rowspan="2">추첨공급</td><td>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
<tr><td>1인 가구</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
</table>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파주시 거주자) → 모집공고일 현재 기타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
</td></tr>
<tr><td>비고</td><td>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td></tr>
</table>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5.10.24.(금)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366,906원**	**~11,151,514원**	**~11,740,362원**	**~12,653,012원**	**~13,565,661원**	**~14,478,311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366,907원~ 11,528,499원**	**11,151,515원~ 13,724,941원**	**11,740,363원~ 14,449,677원**	**12,653,013원~ 15,572,938원**	**13,565,662원~ 16,696,198원**	**14,478,312원~ 17,819,459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1인 가구	160% 이하	**~11,528,499원**	**~13,724,941원**	**~14,449,677원**	**~15,572,938원**	**~16,696,198원**	**~17,819,459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table>
<tr><th>구분</th><th>금액</th><th colspan="2">내용</th></tr>
<tr><td rowspan="2">부동산
(건물+토지)</td><td rowspan="2">3억3,100만원
이하</td><td>건축물</td><td>-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
<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
<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
<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able></td></tr>
<tr><td>토지</td><td>-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td></tr>
</table>

5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대상자</td><td>■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td></tr>
<tr><td>청약통장
자격요건</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
<tr><th>구 분</th><th>파주시 및 경기도</th><th>인천광역시</th><th>서울특별시</th></tr>
<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200만원</td><td>250만원</td><td>3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02㎡ 이하</td><td>300만원</td><td>400만원</td><td>6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35㎡ 이하</td><td>400만원</td><td>700만원</td><td>1,000만원</td></tr>
<tr><td>모든면적</td><td>500만원</td><td>1,000만원</td><td>1,500만원</td></tr>
</table>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td></tr>
<tr><td>당첨자
선정방법</td><td>■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파주시 거주자) → 모집공고일 현재 기타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table>
<tr><th colspan="3">구분</th><th>가점제</th><th>추첨제</th></tr>
<tr><td rowspan="2">전용면적</td><td>60㎡ 초과 85㎡ 이하</td><td>63 / 74 / 84A / 84B / 84C</td><td>40%</td><td>60%</td></tr>
<tr><td>85㎡ 초과</td><td>99 / 113 / 152-P / 171-P / 192-P / 197-P</td><td>-</td><td>100%</td></tr>
</table>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td></tr>
</table>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구 분	내 용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6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table>
<tr><th colspan="3">필요서류</th></tr>
<tr><td>본인 신청 시</td><td colspan="2">•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td></tr>
<tr><td rowspan="2">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td><td colspan="2">•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td></tr>
<tr><td>인감증명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d>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r>
</table>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table>
<tr><td>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td><td colspan="2">-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td></tr>
<tr><td>공고단지 청약연습</td><td colspan="2">-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td></tr>
<tr><td rowspan="2">당첨자발표 서비스</td><td>청약홈</td><td>-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5.11.12.(수) ~ 2025.11.21.(금)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td></tr>
<tr><td>문자</td><td>- 제공일시 : 2025.11.12.(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td></tr>
</table>

7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서류 제출 기간 및 방법

구 분	서류 제출 기간	서류 제출 장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예비입주자 포함)	2025.11.14.(금) ~ 2025.11.19.(수), 10:00~17:00	운정 아이파크 시티 견본주택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390)

- 서류접수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변동 시 일정 재안내 드립니다.
- 당첨자의 서류접수 일정 내 당첨자와 예비입주자는 동일한 일정에 진행될 예정이며, 서류접수 기간내 방문하시어, 서류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간 내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 진행이 불가합니다.

■ 공통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에 의거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계약체결 이전에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당해 거주기간, 배우자 분리세대 등)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서류 미제출 사유로 자격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일에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소명자료 제출 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접수된 서류를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합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대리 신청자로 봄)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이내 제출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 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 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 검증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신청내용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미 소명시에는 부적격자임을 확인하여야 최종 부적격 처리되며, 서류 미제출 및 계약하지 않을 시 계약 포기로 간주하여 당첨자로 분류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일정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공지사항은 추후 '운정 아이파크 시티' **홈페이지(https://unjeong-iparkcity.com)**를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정당 당첨자는 서류제출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필히 제출 해야하며, 상기 서류제출 일정 이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단, 정당 당첨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자격검증 서류제출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예비입주자 동호추첨 및 계약일정 등은 추후 홈페이지에서 공지할 예정입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당첨자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당첨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으로, 인터넷 신청 청약자에 한하여 상기 제 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자격검증 서류제출 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 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신청자격 확인서류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O		신분증	청약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일 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 ※ 모바일 신분증 불가(실물 지참 필수) • 2020.12.21.일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O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청약자와의 관계 등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제외**
	O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신청(계약)용, (본인 발급용, 대리인 발급용 불가) ※ 정부24 온라인 인감증명서 사용가능
	O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필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 필수
		O	청약통장순위확인서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확인서 발급 • 인터넷청약 및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주택 소유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O	복무확인서		• 10년/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군복무기간 명시)
		O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 "전체포함" 발급
기존주택 처분조건 당첨자		O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O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청약자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 체류자의 경우 생업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불가
		O	비자 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청약자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 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 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 및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신청자와 동일국가 체류기간 여부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O		특별공급 대상자 증명서류	청약자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기관추천 명단 확인으로 갈음)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미성년 자녀로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
		O	한부모가족증명서	청약자	•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또는 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O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O	출산 이행 각서		• 임신의 경우
		O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의 경우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O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3년 이상)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O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청약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O		소득증빙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소득산정을 위한 가구원수에 포함하기 위한 경우
				신생아	• 신생아 우선공급 또는 신생아 일반공급으로 청약한 경우
		O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O	출산 이행각서		• 임신의 경우
		O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의 경우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O	부동산 소유현황	청약자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 • 발급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O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O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O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O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직계비속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O	주민등록표초본		•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이상 연속된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만 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O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청약자 또는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배우자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O	출산 이행각서		• 임신의 경우
		O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의 경우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O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청약자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O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청약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O		소득 증빙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O	부동산 소유현황	청약자 및 세대원 전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 • 발급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소득산정을 위한 가구원수에 포함하기 위한 경우
				신생아	• 신생아 우선공급 또는 신생아 일반공급으로 청약한 경우
		O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O	출산 이행각서		• 임신의 경우
		O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의 경우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O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서류		O	위임장	청약자	• 견본주택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O	인감증명서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본인발급용, 대리인 발급용 불가)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 증서 •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O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O	도장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O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 건축물등기부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O			•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O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O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O	그 외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	• 청약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일체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5.10.24.)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서류발급 시 필히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 필요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은 사본을 보관하므로 모바일 신분증이 불가하오니 실물 신분증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및 토지대장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①,②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③주민센터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 (서울시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서울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①,②주민센터 ③서울시이택스 (etax.seoul.go.kr), 위택스(www.wetax.go.kr)
	해당자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농지대장 ②축산업 허가증 ③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①주민센터 ②지자체 축산과 ③토지이음(www.eum.go.kr)
'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①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으로 청약자 및 만 19세 이상 성년자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원본, 직인날인 /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원본, 직인 날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 신고납부대상자 확인"으로 발급)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원본, 직인날인)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①, ②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원본, 직인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	①, ②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명세서),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①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사업자등록증명	①, ② 세무서
	신규사업자	①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공고일 이전 신고분만 인정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①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② 세무서
	법인대표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전년도 재무재표 원본(직인날인) ③ 재직증명서 ④ 사업자 등록증명 ⑤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① ~ ③ 해당직장 ④ 세무서 ⑤ 등기소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원본, 직인날인) ※ 소득신고 미도래로 인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발급되지 않는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원본, 직인날인)	① 세무서,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원본)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또는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명세서),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① 해당직장
전년도 또는 올해 소득이 있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자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총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상기 내용 참조
2024.01.01.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견본주택에 비치) ②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① 견본주택 비치 ② 세무서

- 군복무 중이어서 건강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상기 소득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 상 휴직기간 및 휴직유형(예시: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중에 휴직을 했던 분은 휴직 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모든 제증명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사본 및 FAX수신 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예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제출한 서류에 대해 위·변조 검증을 실시하며, 제출서류의 위·변조 확인 시 수사 기관에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서류 외 소득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생애최초 특별공급)

서류구분	확인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원본, 직인날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원본)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명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원본)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원본)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원본)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세무서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 서류발급 시 필히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 필요합니다.
- 상기 서류 외 자격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과거 5개년도 납부내역은 청약자 본인의 통산 5년의 납부 실적을 의미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신청자격 확인서류**

구분	제출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O		신분증	청약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일 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 ※ 모바일 신분증 불가(실물 지참 필수) • 2020.12.21.일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O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청약자와의 관계 등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O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신청(계약)용, (본인 발급용, 대리인 발급용 불가) ※ 정부24 온라인 인감증명서 사용가능
	O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필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 필수
		O	복무확인서		• 10년/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군복무기간 명시)
		O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 "전체포함" 발급
해외 근무자 (단신 부임)	O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청약자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 체류자의 경우 생업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는 인정불가
		O	비자 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청약자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 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 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신청자와 동일국가 체류기간 여부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추가서류 (가점제, 예비 입주자)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되어있거나,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O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O	당첨사실 확인서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배우자가 서류제출 전 기당첨되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O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구분	제출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O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국내거주기간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해외체류(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O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O	주민등록표초본		•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이상 연속된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O	출입국사실증명서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 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단,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O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서류		O	위임장	청약자	• 견본주택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O	인감증명서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본인발급용, 대리인 발급용 불가)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 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O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O	도장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O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 건축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O			•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O			• 소형, 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O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O	그 외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	• 청약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일체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서류발급 시 필히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은 사본을 보관하므로 모바일 신분증이 불가하오니 실물 신분증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 · 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8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구 분	일 정	계약 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25.11.25.(화) ~ 2025.11.28.(금), 10:00~17:00	운정 아이파크 시티 견본주택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390)
예비당첨자 동·호수 추첨 및 계약체결	일정 추후 통보 예정	

- 당첨자는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합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유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당첨 효력이 상실됨)
- 계약금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 후 무통장 입금영수증을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은 불가합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공급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계좌구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공급대금	계약금 1차	농협은행	301-0375-6208-81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 지정된 1차·2차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1차 계약금 계좌는 분양대금 관리계좌(모계좌)로, 최초 분양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1차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1차 계약금을 제외한 공급대금(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연체이자 등 일체포함)은 세대별 부여된 고유 가상계좌로 지정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급대금 납부계좌는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및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등 직접 수납은 진행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다르거나 입금자 정보가 불분명한 경우,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상기에 명시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지정 계좌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금액은 분양대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금액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선납한 경우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 201동 101호 홍길동인 계약자 : '2010101홍길동'/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 착오 납입 등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통장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 검색 또는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 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다른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일정 기간 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서는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안내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본인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확인증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모바일 신분증 불가(실물 지참 필수)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아파트 계약용(본인 발급용) ※ 자격확인 서류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외
	○		부동산 실거래신고서		• 접수 장소에 비치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홈페이지 서식 게시 / 접수 장소에 비치 (※ 6억 초과 주택에 한함)
		○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 자격확인 서류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일체		• 자격확인 서류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당첨자 (청약신청자)	• 용도 : 주택공급 신청 위임용 또는 아파트 계약 위임용(본인발급분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은 대리불가)
	○		위임장		• 견본주택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신분증, 도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내거소신고증(재외동포), 외국인등록증(외국인)

-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부)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견본주택으로 제출함을 원칙으로 계약 시 구비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시고 부적격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당해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서류만 인정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 시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주택으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신청서의 변조 등 주택 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주변 단지의 신축 공사 및 한강·심학산 주변 등 인근 지역의 개발로 인한 건축 관련 행위와 단지의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비산먼지 및 비산분진 등 포함) 등에 의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 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제출한 신청서류 및 자격확인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주민등록번호 위·변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도용 또는 청약 관련 서류의 위·변조, 타인 명의로 청약통장을 개설하거나 사실상 양도받아 청약한 경우 등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신청은 무효 처리되며,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됩니다. 또한, 부정당첨자로 관리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이후라도 제출 서류상의 결격, 부적격 사유가 확인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해당 신청은 무효로 처리되며 계약은 일방적으로 해약됩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경우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소명 기간 내 소명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청약 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다른 주택(당첨자 발표일이 더 빠른 주택)에 당첨된 경우, 본 아파트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 본 아파트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당첨 통장은 재사용이 불가하며, 부정당첨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 당첨 이후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주체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미통보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사업주체는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주 여부, 거주지 등 공급 자격 및 선정 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를 통해 부적격 당첨자로 확인될 경우 공급계약은 취소됩니다.
- 행정구역, 단지 내 시설명, 동·호수 등의 명칭은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와 관련한 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분양계약자(입주예정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또는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주체의 연대보증인이 보증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 2020.02.21.부터 개정·시행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 당사자인 사업주체 및 계약자는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추가선택품목 계약 등 추가 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가 필요함).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 체결 시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신고를 위임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며, 만일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의 미제출 등 신고에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등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최초 계약 체결 시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입주예정자)가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 1/2씩 부담)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입주예정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 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4호)

- 청약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 처리)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사업주체가 통보한 날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합니다.
  (1)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2)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3) 부적격 소명 대상자로서 사업주체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단, 부적격 당첨자는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당첨사실 삭제 요청서(당사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 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 (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 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하며,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적격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 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인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별표3 에 의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6개월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향후 관련 법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전매금지 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전매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의 본 공급계약 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또한 전매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 문제에 대하여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전매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및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의해 제한 받을 수 있음)
-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 전까지 채무관계(미납대금, 연체료 등)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 제한채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소멸시켜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 시행위탁사 또는 시공사 알선한 중도금 대출기관으로부터 위 표시 부동산을 대상으로 대출받은 자는 전매 시 해당 대출기관이 발행한 전매 당사자간의 대출승계 증거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한 후 상환영수증을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대출기관의 대출 기준 변경, 대출기관 미확보 등에 따라 시행위탁사 또는 시공사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사항{대출 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포함)},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본 아파트의 중도금대출은 이자후불제 조건이 적용되며, 총 분양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시행위탁사 및 시공사가 지정하는 대출취급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 이자후불제 조건은 시행위탁사 또는 시공사가 선정한 금융기관을 통한 중도금 대출이 실행될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수분양자가 자체적으로 조달한 중도금 대출 건에 대해서는 이자후불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도금 대출이자 납부는 대출 개시일부터 대납 종료일(입주지정기간 직전의 중도금 이자 납부일)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시행위탁사가 대납하고, 이후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시행위탁사가 대납한 이자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게 잔금납부 시 함께 상환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중도금 대출이자 납부는 대출 개시일부터 변경된 대납종료일(입주지정기간 직전의 중도금 이자 납부일)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시행위탁사가 대납하고, 이후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시행위탁사가 대납한 이자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게 잔금납부 시 함께 상환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시행위탁사 또는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 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시행위탁사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2차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지연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 협의 조건에 의거 계약금 5%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시행위탁사 또는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기간은 시행위탁사 또는 시공사가 지정한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만기일(또는 대출 종료일)까지입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 보증수수료, 기타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행위탁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일이 명시된 입주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기일 내에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 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입주개시월의 이자납입일까지 시행위탁사가 납부하며, 입주개시월의 이자납입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시행위탁사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안내는 사업주체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 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일이 명시된 입주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관련정책, 대출상품의 종류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 및 관계자는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기타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집중호우 등의 기상이변, 태풍・홍수・폭염・한파・악천후・미세먼지 발현・전쟁・사변・지진・전염병・폭동 등 불가항력의 사태, 대규모 물류 마비, 파업, 문화재 발굴 또는 사업주체

귀책사유가 아닌 행정명령, 공공기관의 기반 시설 건설, 법원의 공사 중지 결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니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 사항(일부 개인정보 포함)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요구 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 여건 미확인으로 단지와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 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타사 또는 시공사의 타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변경)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 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며, 금융기관의 신용불량자, 대출한도 초과자 등 계약자의 사정으로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양계약의 납부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중도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9 발코니 확장 안내

■ **발코니확장 계약**

1) 발코니확장 공사비 및 납부일정

(단위: 원, VAT 포함)

약식 표기	발코니확장 공급금액	계약금 (10%)	잔금 (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63	13,000,000	1,300,000	11,700,000	-
74	15,000,000	1,500,000	13,500,000	-
84A	17,000,000	1,700,000	15,300,000	-
84B	17,000,000	1,700,000	15,300,000	-
84C	17,000,000	1,700,000	15,300,000	-
99	20,000,000	2,000,000	18,000,000	-
113	23,000,000	2,300,000	20,700,000	-
152-P	31,000,000	3,100,000	27,900,000	-
171-P	34,000,000	3,400,000	30,600,000	-
192-P	39,000,000	3,900,000	35,100,000	-
197-P	40,000,000	4,000,000	36,000,000	-

2) 발코니확장 관련 유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급증서에 해당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계약 체결 시 과세기준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시 발코니확장공사 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자재 발주 문제로 인하여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확장 범위는 확장형 단위 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일부 구역만 선택하여 확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이후 관계 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 사유로 발코니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자재의 독점, 품절, 품귀, 생산 중단, 제조사의 도산 등의 불가피한 사유나 시공 여건, 신제품 출시, 경쟁입찰 등의 사정에 따라 동급 또는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형별 확장 위치 등의 세부 사항은 홍보자료 또는 견본주택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으로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등기구, 배선기구의 사양, 수량 등은 확장형에 비해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 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고, 견본주택은 발코니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일부 유무상 옵션타입 반영)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공간 활용도가 저하되거나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고,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발코니확장 공사비는 일괄확장(일부 실 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발코니의 위치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 제46조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공사는 별도계약품목으로 분양계약자(입주예정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발코니확장 공사금액에는 통합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분양계약자(입주예정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과 별도로 발코니확장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등의 문제로 변경계약이 불가능 합니다.
- 발코니확장 계약 시에만,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이 가능합니다.
- 확장 범위는 확장형 단위 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 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경우, 입주자가 발코니확장을 개별 시공함에 따라 입주 후 소음·진동·분진 등이 발생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하며, 입주 후 상당 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별 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하자 및 분쟁 관련 비용 등에 대하여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발코니확장과 가변형 벽체칸막이 제거 변경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발코니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샤시는 사업승인변경 도서에 준하여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습니다.
- 주택형별 단위 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 등이 주택형별 또는 각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칙이 다를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주기적인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환기 덕트 포함)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선택 시 발코니 변화층의 경우 발코니 변화 세대 간 조건에 따라 이와 접한 발코니확장 세대의 확장 발코니 부위에 단열재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천장 돌출, 벽체 돌출, 조명 위치 변경, 일부 배관 노출 등의 마감 상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결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으로 인한 결로 발생 시, 시공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은 시공사에 있습니다. 다만, 결로 발생이 입주자의 귀책 사유인 경우에는 시공사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 발코니확장을 개별 시공(관계법령에 따라 입주자 등의 동의 필요)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가 시공사와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시공(발코니확장 등)하는 경우,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한 부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감재 오염 또는 훼손, 결로, 단열, 주변 세대 피해 등)
- 발코니에 설치되는 발코니 창호 등의 형태 및 사양, 제조사와 모델, 색상/디자인 등은 기능 및 미관개선 등을 위하여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에서 시행, 시공하는 발코니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계되었으며, 사용승인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건축법 시행령」 및「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게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비확장 시 창호 및 각종 가구류(주방가구, 일반가구, 선반가구 등)는 확장 시 제공 품목 등 구성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내 비치된 도면 등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 외부창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는 단열 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환기부족, 생활환경 등에 의한 결로, 곰팡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한 유지관리 부실로 인한

하자발생 시 하자 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확장/비확장 세대가 발생할 경우 비확장 세대에 단열재 및 조적벽체가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 입주자가 설치한 세탁기 및 에어컨 실외기로 인하여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Trap)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배기 덕트와 가스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세대의 발코니 또는 실외기실 천장에는 환기를 위한 전열교환기 및 덕트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입상관, 배수드레인, 수전 등의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 인입 위치에 따라 다용도실 창의 위치가 좌우로 다소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 장치 가동 시 운전소음이 발생하여 거실, 침실내로 전달될 수 있으며, 각 실내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계좌구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발코니확장 공사비	계약금	농협은행	301-0375-6217-91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잔금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 발코니확장 공사비는 지정된 납부일자에 맞추어 입금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주체는 별도의 개별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납부계좌 외의 다른 경로로 이루어진 모든 입금 및 납부는 정당한 납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는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등 직접 수납은 진행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 201동 1101호 홍길동인 계약자 : '2011101홍길동'/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 계약금, 잔금 등 대금의 오납으로 인한 계약 미체결, 연체료 발생 등의 문제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다르거나 입금자 정보가 불분명한 경우,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문제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발코니확장 시에만 선택 가능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 VAT 포함)

분류	구분					판매가	제조사	비고
	제품명		선택사항	설치대수	설치위치			
일반형	63	기본형	전체	4대	거실+침실1+침실2+침실3	6,160,000	LG전자	
			기본	2대	거실+침실1	3,420,000		
		공기청정형	전체	4대	거실+침실1+침실2+침실3	7,450,000		
			기본	2대	거실+침실1	4,060,000		
	74	기본형	전체	4대	거실+침실1+침실2+침실3	6,610,000		
			기본	2대	거실+침실1	3,600,000		
		공기청정형	전체	4대	거실+침실1+침실2+침실3	7,910,000		
			기본	2대	거실+침실1	4,240,000		
	84A	기본형	전체	5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7,820,000		
			기본	3대	거실+주방+침실1	4,800,000		
		공기청정형	전체	5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9,440,000		
			기본	3대	거실+주방+침실1	5,770,000		
	84B	기본형	전체	5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7,820,000		
			기본	3대	거실+주방+침실1	4,800,000		
		공기청정형	전체	5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9,440,000		
			기본	3대	거실+주방+침실1	5,770,000		
	84C	기본형	전체	5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7,820,000		
			기본	3대	거실+주방+침실1	4,800,000		
		공기청정형	전체	5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9,440,000		
			기본	3대	거실+주방+침실1	5,770,000		
	99	기본형	전체	6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9,110,000		
			전체	5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확장기본형/주방특화형)	7,880,000		
			기본	3대	거실+주방+침실1	5,010,000		
		공기청정형	전체	6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11,060,000		
			전체	5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확장기본형/주방특화형)	9,500,000		
			기본	3대	거실+주방+침실1	5,980,000		
	113	기본형	전체	6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9,400,000		

분류	구분					판매가	제조사	비고
	제품명		선택사항	설치대수	설치위치			
			전체	5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확장기본형/침실특화형)	8,160,000		
			기본	3대	거실+주방+침실1	5,410,000		
		공기청정형	전체	6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11,340,000		
			전체	5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확장기본형/침실특화형)	9,780,000		
			기본	3대	거실+주방+침실1	6,380,000		
	152-P	기본형	전체	6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침실4	10,200,000		
			기본	3대	거실+주방+침실1	5,430,000		
		공기청정형	전체	6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침실4	12,150,000		
			기본	3대	거실+주방+침실1	6,400,000		
	171-P	기본형	전체	7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침실4+알파룸	11,410,000		
			기본	3대	거실+주방+침실1	5,430,000		
		공기청정형	전체	7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침실4+알파룸	13,680,000		
			기본	3대	거실+주방+침실1	6,400,000		
	192-P	기본형	전체	7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침실4+알파룸	11,700,000		
			기본	3대	거실+주방+침실1	5,430,000		
		공기청정형	전체	7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침실4+알파룸	13,970,000		
			기본	3대	거실+주방+침실1	6,400,000		
	197-P	기본형	전체	7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침실4+알파룸	11,700,000		
			기본	3대	거실+주방+침실1	5,430,000		
		공기청정형	전체	7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침실4+알파룸	13,970,000		
			기본	3대	거실+주방+침실1	6,400,000		
고급형	63	기본형	전체	4대	거실+침실1+침실2+침실3	7,160,000	LG전자	
			기본	2대	거실+침실1	3,940,000		
		공기청정형	전체	4대	거실+침실1+침실2+침실3	8,740,000		
			기본	2대	거실+침실1	4,730,000		
	74	기본형	전체	4대	거실+침실1+침실2+침실3	7,670,000		
			기본	2대	거실+침실1	4,180,000		
		공기청정형	전체	4대	거실+침실1+침실2+침실3	9,250,000		
			기본	2대	거실+침실1	4,970,000		

분류	구분					판매가	제조사	비고
	제품명		선택사항	설치대수	설치위치			
	84A	기본형	전체	5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9,050,000		
			기본	3대	거실+주방+침실1	5,570,000		
		공기청정형	전체	5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11,030,000		
			기본	3대	거실+주방+침실1	6,750,000		
	84B	기본형	전체	5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9,050,000		
			기본	3대	거실+주방+침실1	5,570,000		
		공기청정형	전체	5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11,030,000		
			기본	3대	거실+주방+침실1	6,750,000		
	84C	기본형	전체	5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9,050,000		
			기본	3대	거실+주방+침실1	5,570,000		
		공기청정형	전체	5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11,030,000		
			기본	3대	거실+주방+침실1	6,750,000		
	99	기본형	전체	6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10,640,000		
			전체	5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확장기본형/주방특화형)	9,160,000		
			기본	3대	거실+주방+침실1	5,820,000		
		공기청정형	전체	6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13,010,000		
			전체	5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확장기본형/주방특화형)	11,140,000		
			기본	3대	거실+주방+침실1	7,010,000		
	113	기본형	전체	6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10,930,000		
			전체	5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확장기본형/침실특화형)	9,450,000		
			기본	3대	거실+주방+침실1	6,230,000		
		공기청정형	전체	6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13,300,000		
			전체	5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확장기본형/침실특화형)	11,430,000		
			기본	3대	거실+주방+침실1	7,420,000		
	152-P	기본형	전체	6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침실4	11,740,000		
			기본	3대	거실+주방+침실1	6,260,000		
		공기청정형	전체	6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침실4	14,110,000		
			기본	3대	거실+주방+침실1	7,450,000		
	171-P	기본형	전체	7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침실4+알파룸	13,190,000		
			기본	3대	거실+주방+침실1	6,260,000		

분류	구분					판매가	제조사	비고
	제품명		선택사항	설치대수	설치위치			
		공기청정형	전체	7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침실4+알파룸	15,960,000		
			기본	3대	거실+주방+침실1	7,450,000		
	192-P	기본형	전체	7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침실4+알파룸	13,480,000		
			기본	3대	거실+주방+침실1	6,260,000		
		공기청정형	전체	7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침실4+알파룸	16,250,000		
			기본	3대	거실+주방+침실1	7,450,000		
	197-P	기본형	전체	7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침실4+알파룸	13,480,000		
			기본	3대	거실+주방+침실1	6,260,000		
		공기청정형	전체	7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침실4+알파룸	16,250,000		
			기본	3대	거실+주방+침실1	7,450,000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관련 유의사항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공급금액은 각 세대별 에어컨 냉매배관 설비 시공비용을 감액하고 산정한 금액입니다.
- 시공 품질 관리상의 사유로 옵션 행사 시점 이후에는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이 불가합니다.
- 발코니확장 선택 시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이 가능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GRILL TYPE(송풍구가 노출되는 형식)입니다.
- 공기청정형 시스템에어컨은 먼지 제거, 탈취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고급형 옵션에는 AI 자동건조 및 UV 살균 기능 등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이미 선정된 시스템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및 유상 옵션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은 스탠드, 안방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총 2개소의 냉매배관만 시공됩니다.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거실의 스탠드형, 안방의 벽걸이형 기준의 냉매 배관을 설치하지 아니함)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기본으로 제공되는 거실과 침실의 일반에어컨용 냉매매립배관과 콘센트는 설치되지 않으며 판매가격은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추가 에어컨(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등)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해 환기 디퓨져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배관 위치 등이 이동(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 실내기 및 실외기의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 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등기구 위치 등 시공 여건에 따라 실내기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용량에 맞는 제품으로 실외기 공간에 설치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근접한 실내로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견본주택 연출을 위한 장치이며, 실제 시공 시 설치되는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 제품으로 난방 기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제공되는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리모컨)으로 제공되며,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시운전을 위해 보양지가 제거되며, 입주 시 보양지가 제거된 상태로 공급되게 됩니다.
- 시공, 공정, 품질, 자재수급, 배관/드레인의 공사상 등의 문제로 1층 세대 골조 공사 시점 이후에는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및 유상 옵션 추가, 해지계약이 불가합니다.

■ 빌트인 가전

(단위 : 원 / VAT 포함)

적용품목	주택형	구성 및 모델	판매가	제조사	비고
빌트인 냉장고	63	M62BAAA332+수납장	4,200,000	LG전자	
	113, 152-P, 171-P, 192-P, 197-P		4,900,000		
	74, 84A, 84B, 84C, 99	M62BAAA332+판넬	3,900,000		
	전타입	M62BAAA332(4도어냉장)+Z334AAA151(3도어김치냉장)	6,200,000		Fit&Max
	63, 84B, 84C	BC1L4AA+BC1F4AA+수납장	4,000,000		
	152-P, 171-P, 192-P, 197-P		4,500,000		
	74, 84A, 99, 113	BC1L4AA+BC1F4AA	3,500,000		
	전타입	BC1L4AA(냉장)+BC1F4AA(냉동)+BC1K4AA(김치냉장)	6,400,000		Fit&Max
식기세척기	전타입	DIE5PT (14인용)	1,190,000	LG전자	
		DIE6PT (14인용/열풍건조)	1,450,000		
전기쿡탑 (3구쿡탑)	전타입	BEY3GSBIE (인덕션2구+하이라이트1구)	850,000	LG전자	
		BEI3ASB4BIE (블랙 인덕션 3구)	1,050,000		
		BEI3ANHLBIE (화이트 인덕션 3구)	1,200,000		
렌지후드	192-P, 197-P	아일랜드형	310,000	힘펠	

■ 인테리어

(단위 : 원 / VAT 포함)

유형	주택형	구성	판매가	제조사(공급사)	비고
현관중문	63	3연동 슬라이딩 도어	2,450,000	HDC현대산업개발	
	74	3연동 슬라이딩 도어	2,450,000		
	84A	원슬라이딩도어	1,540,000		
	84B	원슬라이딩도어	1,540,000		
	84C	원슬라이딩도어	1,540,000		
	99	원슬라이딩도어	1,540,000		
	113	원슬라이딩도어	1,540,000		
	152-P	원슬라이딩도어	1,960,000		
	171-P	원슬라이딩도어	1,960,000		
	192-P	원슬라이딩도어	3,920,000		
	197-P	원슬라이딩도어	3,920,000		
현관특화	63	현관 방화문 측벽 시트판넬	740,000	HDC현대산업개발	
	74	현관 방화문 측벽 시트판넬	780,000		
	84A	현관 방화문 측벽 시트판넬	780,000		

유형	주택형	구성		판매가	제조사(공급사)	비고
	84B	현관 방화문 측벽 시트판넬		810,000		
	84C	현관 방화문 측벽 시트판넬		750,000		
	99	현관 방화문 측벽 시트판넬		760,000		
	113	현관 방화문 측벽 시트판넬		780,000		
	152-P	현관 방화문 측벽 시트판넬+현관 PET판넬		4,390,000		
	171-P	현관 방화문 측벽 시트판넬+현관 PET판넬		3,850,000		
	192-P	현관 방화문 측벽 시트판넬+현관 PET판넬		4,280,000		
	197-P	현관 방화문 측벽 시트판넬+현관 PET판넬		4,280,000		
주방특화	63	조명형 유리 상부장		1,690,000	HDC현대산업개발	
	74	조명형 유리 상부장+장식장		6,200,000		
	84A	조명형 상부장+장식장		8,910,000		
	84B	조명형 상부장		1,620,000		
	84C	조명형 상부장+장식장+현관창고 확장		8,710,000		
	99	와이드키친+아일랜드확장+조명형 유리 상부장		11,300,000		
	113	조명형 유리 상부장+장식장		10,210,000		
	152-P	상부장 마감재 변경+유리 장식장		28,220,000		
	171-P	수입 팬트리도어+조명형 유리 장식장		28,450,000		
	192-P	수입 팬트리도어+조명형 유리 장식장		25,790,000		
	197-P	수입 팬트리도어+조명형 유리 장식장		25,790,000		
주방 엔지니어드스톤	63	상판+벽	확장기본형	1,900,000	HDC현대산업개발	
	74	상판+벽	확장기본형	2,150,000		
	84A	벽	확장기본형	1,890,000		
	84A	벽	주방특화형	1,950,000		
	84B	벽	확장기본형	1,420,000		
	84C	벽	확장기본형	1,580,000		
	99	벽	확장기본형	1,640,000		
	99	벽	주방특화형	2,380,000		
	113	벽	확장기본형	1,630,000		
	152-P	벽	확장기본형	3,080,000		
	171-P	벽	확장기본형	1,840,000		
	192-P	벽	확장기본형	1,720,000		
	197-P	벽	확장기본형	1,720,000		
주방 세라믹타일 (상판+벽)	63	확장기본형		9,780,000	HDC현대산업개발	
	74	확장기본형		10,590,000		
	74	주방특화형		10,850,000		
	84A	확장기본형		10,160,000		

유형	주택형	구성	판매가	제조사(공급사)	비고
	84A	주방특화형	11,260,000		
	84B	확장기본형	7,320,000		
	84C	확장기본형	13,870,000		
	84C	주방특화형	16,210,000		
	99	확장기본형	9,280,000		
	99	주방특화형	11,240,000		
	113	확장기본형	9,240,000		
	113	주방특화형	11,600,000		
	152-P	확장기본형	13,390,000		
	171-P	확장기본형	11,330,000		
	171-P	주방특화형	14,010,000		
	192-P	확장기본형	11,070,000		
	192-P	주방특화형	13,370,000		
	197-P	확장기본형	11,070,000		
	197-P	주방특화형	13,370,000		
거실특화	63	세라믹타일(아트월)+시트판넬(소파뒷벽)	4,040,000	HDC현대산업개발	
	74	세라믹타일(아트월)+시트판넬(소파뒷벽)	4,030,000		
	84A	세라믹타일(아트월+소파뒷벽)	8,520,000		
	84B	세라믹타일(아트월+소파뒷벽)	7,610,000		
	84C	세라믹타일(아트월+소파뒷벽)	8,530,000		
	99	세라믹타일(아트월+소파뒷벽)	10,260,000		
	113	세라믹타일(아트월+소파뒷벽)	10,260,000		
	152-P	세라믹타일(아트월+소파뒷벽)	11,160,000		
	171-P	세라믹타일(아트월+소파뒷벽)	12,530,000		
	192-P	세라믹타일(아트월+소파뒷벽)	9,190,000		
	197-P	세라믹타일(아트월+소파뒷벽)	9,190,000		
복도특화 (시트판넬+PET판넬)	63	확장기본형	3,300,000	HDC현대산업개발	
	63	침실특화(수납강화형)	3,720,000		
	74	확장기본형	3,280,000		
	74	주방특화형	2,520,000		
	74	침실특화(수납강화형)	3,710,000		
	84A	확장기본형	2,240,000		
	84A	주방특화형	1,580,000		
	84A	침실특화(수납강화형)	1,580,000		
	84B	확장기본형	3,220,000		
	84B	침실특화(수납강화형)	2,610,000		
	84C	확장기본형	2,510,000		

유형	주택형	구성	판매가	제조사(공급사)	비고
	84C	주방특화형	1,800,000		
	84C	침실특화(수납강화형)	2,700,000		
	99	확장기본형	3,040,000		
	99	주방특화형	2,230,000		
	113	확장기본형	2,480,000		
	152-P	확장기본형	7,830,000		
	171-P	확장기본형	9,560,000		
	192-P	확장기본형	20,000,000		
	197-P	확장기본형	20,380,000		
마루 (광폭강마루)	63	확장기본형	1,170,000	동화자연마루	
	74	확장기본형	1,360,000		
	84A	확장기본형	1,570,000		
	84B	확장기본형	1,460,000		
	84C	확장기본형	1,510,000		
	99	확장기본형	1,840,000		
	113	확장기본형	2,150,000		
	152-P	확장기본형	2,720,000		
	171-P	확장기본형	3,230,000		
	192-P	확장기본형	3,500,000		
	197-P	확장기본형	3,530,000		
침실특화 (붙박이장형)	63	침실3	1,110,000	현대리바트	
	74	침실3	1,110,000		
	84A	침실3	1,240,000		
	84B	침실3	1,240,000		
	84C	침실3	1,240,000		
침실특화 (수납강화형)	63	시스템가구+슬라이딩도어+PET판넬	4,250,000	HDC현대산업개발	
	74	시스템가구+슬라이딩도어+PET판넬	4,250,000		
	84A	시스템가구+슬라이딩도어+PET판넬	4,320,000		
	84B	시스템가구+슬라이딩도어+PET판넬	4,440,000		
	84C	시스템가구+슬라이딩도어+PET판넬	4,320,000		
	113	드레스룸 연장+벽판넬형시스템가구+멀티룸	20,350,000		
	113	드레스룸 연장+벽판넬형시스템가구	22,130,000		
	113	벽판넬형시스템가구+팬트리	23,040,000		
드레스룸 특화	63	드레스룸 통합+벽판넬형시스템가구+슬라이딩도어	4,120,000	HDC현대산업개발	
	74	드레스룸 통합+벽판넬형시스템가구+슬라이딩도어	5,220,000		
	84A	드레스룸 통합+벽판넬형시스템가구+슬라이딩도어	7,620,000		
	84B	드레스룸 통합+벽판넬형시스템가구+슬라이딩도어	5,670,000		

유형	주택형	구성		판매가	제조사(공급사)	비고
	84C	드레스룸 통합+벽판넬형시스템가구+슬라이딩도어		5,680,000		
	99	드레스룸 통합+벽판넬형시스템가구+슬라이딩도어		7,670,000		
	152-P	침실1	드레스룸 통합+벽판넬형시스템가구+슬라이딩도어	8,960,000		
	152-P	침실4	드레스룸 통합+벽판넬형시스템가구+슬라이딩도어	4,920,000		
	171-P	드레스룸 통합+벽판넬형시스템가구+슬라이딩도어		14,890,000		
	192-P	드레스룸 통합+벽판넬형시스템가구+슬라이딩도어		5,390,000		
	197-P	드레스룸 통합+벽판넬형시스템가구+슬라이딩도어		5,740,000		
조명특화	63	거실		3,300,000	HDC랩스	
		침실(안방포함)		1,430,000		
		욕실		700,000		
		현관/복도/주방		1,330,000		
	74	거실		3,450,000		
		침실(안방포함)		1,430,000		
		욕실		700,000		
		현관/복도/주방		1,330,000		
	84A	거실		3,650,000		
		침실(안방포함)		1,430,000		
		욕실		700,000		
		현관/복도/주방		1,450,000		
	84B	거실		4,100,000		
		침실(안방포함)		1,430,000		
		욕실		700,000		
		현관/복도/주방		1,450,000		
	84C	거실		3,520,000		
		침실(안방포함)		1,800,000		
		욕실		700,000		
		현관/복도/주방		1,680,000		
	99	거실		2,560,000		
		침실(안방포함)		1,890,000		
		욕실		700,000		
		현관/복도/주방		1,680,000		
	113	거실		5,750,000		
		침실(안방포함)		1,810,000		
		욕실		700,000		
		현관/복도/주방		2,150,000		
	152-P	거실		5,840,000		
		침실(안방포함)		1,840,000		

유형	주택형	구성	판매가	제조사(공급사)	비고
		욕실	850,000		
		현관/복도/주방	2,770,000		
	171-P	거실	7,500,000		
		침실(안방포함)	2,210,000		
		욕실	1,190,000		
		현관/복도/주방	3,090,000		
	192-P	거실	6,680,000		
		침실(안방포함)	2,210,000		
		욕실	1,190,000		
		현관/복도/주방	3,550,000		
	197-P	거실	6,680,000		
		침실(안방포함)	2,210,000		
		욕실	1,190,000		
		현관/복도/주방	3,550,000		
사각싱크볼(고급형)	전타입(PH세대 제외)	사각싱크볼(고급형/국산)	320,000	사각싱크볼(리젠스)	
외산 싱크 수전	전타입(PH세대 제외)	외산 싱크 수전	600,000	수전(Nobili Live)	
비데일체형 양변기	전타입(PH세대 제외)	플랫내추럴 (2개소)	1,980,000	아메리칸스탠다드	
	152-P, 171-P	플랫내추럴 (3개소)	2,970,000		
	192-P, 197-P	플랫내추럴 (4개소)	3,960,000		
욕실팬	전타입(PH세대 제외)	FHD3-C150P (2개소)	1,100,000	힘펠	
	152-P, 171-P	FHD3-C150P (3개소)	1,650,000		
	192-P, 197-P	FHD3-C150P (4개소)	2,200,000		
각 실 개별제어 환기시스템	63	확장기본형	2,040,000	HDC랩스	
	74	확장기본형	2,040,000		
	84A	확장기본형	2,150,000		
	84B	확장기본형	2,240,000		
	84C	확장기본형	2,040,000		
	99	확장기본형	2,350,000		
	113	확장기본형	2,460,000		
	152-P	확장기본형	3,210,000		
	171-P	확장기본형	3,210,000		
	192-P	확장기본형	3,770,000		
	197-P	확장기본형	3,770,000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는 분양대금 및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해 온라인 수납만 가능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등 직접 수납은 진행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 201동 1101호 홍길동인 계약자 : '2011101홍길동'/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다르거나 입금자 정보가 불분명한 경우,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문제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관련 유의사항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에 관한 상세내용 중 공고문에 기재하지 못한 내용은 추후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 시 별도의 안내 후 계약 진행합니다. (가전 및 기타 유상 옵션 품목은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일자, 추가 유상 선택품목 및 납부계좌 등은 추후 통보함)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은 시행수탁자인 ㈜하나자산신탁과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며, 시공사와 별도 계약을 통해 진행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 외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추후 추가되거나 변경(금액 포함)될 수 있으며, 추가 또는 변경되는 품목(금액 포함)에 대해서는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 체결 전에 분양계약자(입주예정자)에게 관련 내용이 안내될 예정입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입주자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의 구입 의사가 있는 계약자에 한하여 별도로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사항입니다.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은 주택공급계약 및 발코니확장 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입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비용은 아파트 공급가격과는 별도로 부담하여야 하며, 해당 금액에는 부가가치세와 시공 및 설치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자재, 공사관리비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 해당 비용은 현장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금액은 공동주택 분양금액과는 별개로, 빌트인 가구 매립 시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며, 빌트인 설치에 따라 기존 설치 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 품목에 따른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마감자재 및 제품, 이미지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세대 마감자재 및 제품 등의 품절, 품귀, 생산 중단(성능 개선, 디자인 개선, 단종 등), 특허권 분쟁, 제조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 출시 등에 따라 동급 수준 또는 동급 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사 제품으로 대체되거나 형태, 재질, 색상, 하드웨어(힌지, 레일, 가구 조명, 스위치 등)의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발코니확장 계약 시에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판매가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시공 상의 관리문제(발주 및 설치)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변경 및 해제가 불가합니다. (추가 품목계약 계약 체결과 관련한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상기 제품의 모델은 설치시점에 이르러 생산 단종 (제품의 품절, 품귀, 성능개선, 디자인 개선 등의 사유) 후 신모델 출시 시 동제조사의 동급 이상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으며, 제조사의 폐업, 부도,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제품공급이 불가시 동급 이상의 타제조사 제품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의 발생시 공고한 바에 따라 적용되며 별도의 동의서는 징구하지 않음)

• 상기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동일 제품일지라도 산정기준 및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단위 세대에는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이 적용되어 있으므로, 발코니 비확장 시 및 확장 시의 기본 제공 품목(주방가구, 일반가구, 선반가구 등) 등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 견본주택 내 비치된 카탈로그, 마감재 리스트, 견본주택 단위 세대 내 마련된 POP 안내문 등을 통해 반드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가 제공하는 가전제품 선택(옵션)품목 목록은 추후 추가 및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가구 형태 및 가전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니 추후 옵션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중 완제품으로 시공된 전자제품의 하자는 아파트 하자담보 책임범위에서 제외되며, 하자 발생 시 제조사 보증책임에 따라 처리됩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의 품목 적용 및 설치 위치는 주택형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적용 및 위치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인덕션 옵션 선택 시에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가스쿡탑은 시공 및 제공되지 않으며, 판매가격 산정 시 해당하는 비용을 감액하여 반영합니다.

• 주방 특화 옵션 선택 시 아일랜드형 렌지후드가 설치됩니다. (63, 74, 84A, 84B, 84C, 99, 113타입 적용)

• 가스쿡탑 설치 시 가스차단기가, 전기쿡탑 설치 시 전기차단기가, 가스 및 전기 겸용 쿡탑(하이브리드) 설치 시에는 가스차단기와 전기차단기가 각각 설치되며, 차단기의 추가 설치나 변경 설치는 불가능합니다.

• 빌트인가전, 붙박이가구류 등의 판매가격은 기본으로 제공되는 부위의 금액과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선택으로 인한 추가비용을 가감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빌트인 냉장고는 타입별 제공내용이 상이하오니 제품 구성 및 모델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침실특화(붙박이장형), 침실특화(수납강화형)은 동시 선택이 불가합니다.

• 가구 옵션, 마감 옵션, 조명 옵션 미선택 시에는 기본 설계대로 시공됩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내 간접조명이 포함되는 경우 배관·배선·안정기 설치 등으로 인하여 가림판이 설치될 수 있으며, 간접조명의 크기와 깊이, 등기구 사양은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명 옵션 선택 시, 우물천장과 커튼박스의 크기와 위치가 기본형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의 판매가격은 확장기본형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평면옵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전시(일부)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본 아파트 특성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되는 품목으로써 주택형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상품구성 및 디자인, 제품모델, 판매가격에 대해 교체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은 공급계약자를 대상으로 향후 별도계약일을 지정하여 진행되며, 계약 전에 공급계약자를 대상으로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선택사항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됩니다.

- 시공, 공정, 품질, 자재수급 등의 사유로 인해, 별도로 통지되는 계약 체결 일정 및 1층 골조 공사 이후에는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에 대한 계약 및 해지가 불가합니다.
- 펜트하우스 세대는 상품성 향상을 위하여 추후 설계 변경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세대 평면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의 구성, 사양 및 금액 등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해당 사항은 수분양자에게 개별 통보 및 협의 절차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11 기타 계약자 안내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급계약서에 따릅니다.

■ 입주자 사전 방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7호)

- 사업주체는 「주택법」제48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는 앞으로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입주월을 통보하고, 실 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각각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지정기간은 500세대 이상 단지는 최소 60일 이상, 500세대 미만 단지는 45일 이상 제공합니다.
- 사전방문 진행절차
  ① 사전점검 안내문 발송 → ② 입주자 현장도착 → ③ 접수, 교육안내 → ④ 입주자 점검 및 지적사항 작성 → ⑤ 점검표 제출 → ⑥ 입주전 보수 및 보수사항여 부 확인
- 사전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 공사

■ 입주예정일 : 2028년 12월 예정(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실입주월을 통보하고,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각각 통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입주 예정자들의 원활한 입주를 위하여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60일 이상의 입주지정기간을 설정할 예정이며, 정확한 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전염병,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지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 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이내에 잔여 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를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비용(중도금대출 상환 영수증 또는 중도금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 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2개소,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맘스스테이션 등
- 커뮤니티시설[피트니스, 골프연습장, 수영장, 사우나, 실내체육관, 탁구장, 코인세탁실, 카페테리아, 미디어실 등]

■ 공동주택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동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9호의2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지하 1층 : 2.7m (택배차량 진입가능) 지하 2층 : 2.3m (택배차량 진입불가)	주출입구 주차장 출입구 : 2.7m 부출입구 주차장 출입구 : 2.7m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제3항 및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구분	등급
내진능력	MMI등급 VII-0.204g (내진 I 등급)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구분		적용 여부	사양, 성능, 설치부위, 설치개수 등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일반사항 설계기준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설계기준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설계기준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급수펌프(마목)	적용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가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 공동주택성능등급, 녹색건축, 예비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명: 파주메디컬클러스터 도시개발구역 A2BL 공동주택
2. 신 청 자: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3. 대 지 위 치: 경기도 파주시 파주메디컬클러스터 도시개발구역 A2BL
4. 성 능 등 급

가. 소음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2.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화장실 급배수 소음	★

나. 구조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가변성	★★
3.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다. 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2. 괴도한 지하개발 지양	-
3. 토공사 절토·성토량(땅깎기·흙쌓기)를 한 땀 최소화	-
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5. 에너지 성능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7. 신·재생에너지 이용	-
8.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9.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
10.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
11. 저탄소 자재의 사용	★★
12.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13.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15.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16. 빗물관리	★★★★
17.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
18. 절수형 기기 사용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다. 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20. 연계된 녹지축 조성	-
21. 자연지반 녹지율	★
22. 생태면적률	★★
23. 생물서식공간(비오톱) 조성	-
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25. 자연 환기성능 확보	-
26.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27.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라. 생활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지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5.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6.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7. 사용자 매뉴얼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10.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13. 홈네트워크 중합시스템	★★
14. 방범안전 콘텐츠	★
15. 주차공간 추가확보	★★

마. 화재·소방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감지 및 경보설비	★
2. 제연설비	★
3. 내화성능	★
4. 수평피난거리	★
5. 복도 및 계단 유효너비	★
6. 피난설비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10월 17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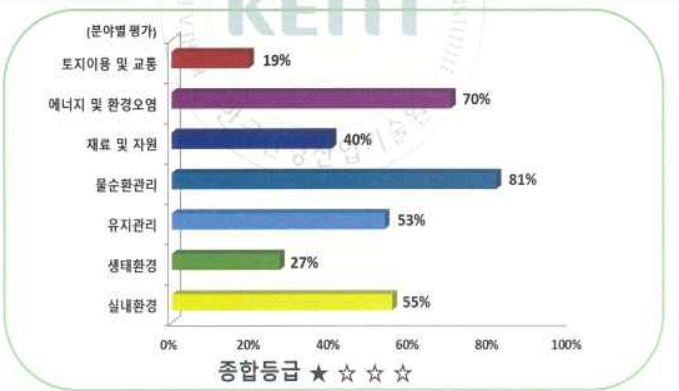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건축물 개요	
건축물명	: 파주메디컬클러스터 도시개발구역 A2BL 공동주택
건 축 주	: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준공(예정)일	: 2028년 11월 30일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파주메디컬클러스터 도시개발구역 A2BL
층 수	: 지하 2층, 지상 29층
연 면 적	: 607,118.7483㎡ (3,250세대)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설 계 자	: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인증 개요	
인증번호	: G-SEED-P-2025-0996-10
인증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유효기간	: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앞선 날까지
인증등급	
인증등급	: 일반(그린4등급)
인증기준	: 녹색건축 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29호, 환경부고시 제2023-172호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 **일반(그린4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10월 17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 주택분양보증약관에 따른 보증기관 및 보증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1292025-101-0004200 호	**₩1,384,984,315,0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분양계약자(입주예정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공사는「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 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채권자 등의 협력의무(보증약관 제3조)

①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사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조사의 협조 및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입주예정자대표회의 구성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증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② 보증채권자는 공사가 선정한 승계사업자 또는 시공사의 공사를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③ 분양권양수자는 양도자가 이미 납부한 입주금영수증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회생절차개시신청·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공동주택 공사진행 정보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공동주택 사업장의 공사진행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공급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 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기타사항은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람(1566-9009)

■ 관리형 토지신탁

- 본 공급물건은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자인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시행수탁자 ㈜하나자산신탁 및 시공사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 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계약자(입주예정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본 공급계약에서 시행수탁자 ㈜하나자산신탁은 분양 물건에 대한 분양공급자(매도인)의 지위에 있으나, 본 건 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업무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을 한도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본 공급계약으로 인한 매도인으로서 일체의 의무 및 실질적 시행 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신탁계약의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파주메디컬클러스터㈜이 부담하고 있음을 인지합니다.
  - 본 공급물건은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물건인 바, 위탁자 겸 수익자인 파주메디컬클러스터㈜와 수탁자 ㈜하나자산신탁 간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이 종료 또는 해제되는 경우(개별 수분양자에게로의 소유권 이전 포함), 본 사업상 시행자의 지위에 기한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는 위탁자 겸 수익자인 파주메디컬클러스터㈜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며, 이에 따라 수탁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공급계약서 변경 등 별도의 조치없이 위탁자 겸 수익자인 파주메디컬클러스터㈜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됩니다.
  - 분양계약자(입주예정자)는 본 분양물건이 토지신탁사업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하자보수와 관련된 모든 책임이 위탁자 겸 수익자인 파주메디컬클러스터㈜과 시공사인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또는 그 밖의 부대사업비와 이와 관련한 PF대출금 상환 등 해당 분양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급계약상 내용 외 수분양자와의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 본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규정된 시행수탁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VAT 포함)

구 분	건축 감리	전기 감리	소방 감리	정보통신 감리
회사명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 ㈜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펨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진일기술단	㈜선한이엔지	㈜동도이엔씨
감리금액	₩ 18,342,060,000 원	₩ 2,077,025,000 원	₩ 2,680,947,387 원	₩ 1,210,000,000 원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시행수탁사	시공사	시행위탁사
상호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주식회사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9층 (한강로3가)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513-1, 3층 301호 (문발동, 폴리큐브)
법인등록번호	110111-1714818	110111-6740008	284911-0241338

12 단지 여건 등 설계관련 유의사항

※ 청약자 및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분		내용
공통	일반사항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며, 기재사항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적용합니다. • 주거 공용면적과 기타 공용면적은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면적이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전염병,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적인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에 대한 소유권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각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면적분할에 따른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의 면적에 대하여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실 대지의 측량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건축허가 변경 및 신고, 성능 개선을 위한 설계변경 등에 따라 본 계약건물의 견본주택, 건축물의 배치구조, 단지 내 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보강토 블록, 조경용 석축 등 포함)의 형태 및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및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평형, 계약면적 등이 계약 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주거 공용면적은 세대별 전용면적에 따라 균등 배분(단, 단위 세대 벽체 공용면적은 단위 세대에 배분)되었으며, 기타 공용면적(부대복리시설, 펌프실, 주차장 등) 또한 전체면적을 합산하여 전용면적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되어 있습니다. • 단위 세대 평면의 전용면적은 확장형을 위한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법정 발코니 초과면적이 일부 산입되어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단지 내 상가는 공동주택단지와 별도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가의 대지는 분할되지 않는 대지로서 아파트 대지 내 일정 면적의 지분으로 배분되어 있으며, 아파트 및 상가의 대지 면적이 차후 확정측량 등 지적정리로 인하여 면적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허용오차 내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금액을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 아파트의 명칭, 브랜드로고, 동 표시, 외부색채 및 경관조명, 교통시설물, 조경 등의 계획은 예정사항으로 관계기관의 심의 및 협의결과에 따라 입주 시 본 광고와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악취 등 주위 환경을 확인 바랍니다. (추후 소송 및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 단지 주변 현황은 개인차에 따라 주거환경(조망, 소음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청약자 및 계약자는 현장 등을 확인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사전에 현장 등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한강·심학산 주변을 포함한 인근 지역 개발, 주변 시설물 및 주변 건물의 신축,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한강·심학산 조망 등), 소음, 진동(비산먼지 및 비산분진 등 포함), 냄새,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으로 환경권,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 하여야 하며, 청약 신청 또는 계약 전에 사업부지 여건 및 주위 환경을 확인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홍보물과 인쇄물(공급안내 등) 및 분양 홈페이지상에 표시된 컴퓨터그래픽, 조감도, 이미지,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 견본주택 내 전시모형(건축물, 조경계획, 식재, 시설물, 포장계획, 부지의 고저차 등)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 및 시공사에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공급현황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 부분 또는 공급안내, 기타 홍보물에 사용된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조감도, 사진, 모형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마감 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시설 등의 추가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 후에 청약 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변경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새시, 인테리어, 부동산 중개 등)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 옥외조명 및 경관조명, 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조명, 수경시설, 영구배수 및 기타시설물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경관조명에 의한 야간 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관리비 예치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자(입주예정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분양계약자(입주예정자)는 반드시 공급계약 시 사업주체로부터 분양보증약관 등 보증내용(분양보증 이행 대상이 아닌 사항 포함)에 대한 설명을 듣고 확인(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발코니)은 실제 시공 시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면적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이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허용오차 내 분양가 정산은 없습니다.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단지모형도, 전시물(건축물, 조경 및 시설물 등)의 CG[컴퓨터그래픽]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분양대금 납부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주변현황(도로, 공원, 가로수, 건물, 식재, 가로등 등)이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와 관련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모형도면에 표기된 주출입구 1 및 주출입구 3 내부 교차로의 교통섬 식재는 교통안전 등의 사유로 모형에서 제외되었으며, 관련 도면은 향후 설계 보완 및 인허가 협의를 통해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인허가	• 본 아파트가 공급되는 대지는「토지이용계획」상 도시개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등으로 지정(예정)되어 있으며, 향후 관련 인·허가 절차 및 관계 기관의 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에 청약자 및 계약자는 해당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이를 인지한 후 청약 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가 속한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세부 내용,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은 사업주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 취소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가 속한 도시개발사업구역과 관련한 인·허가 및 각종 평가(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개선대책 등), 지구단위계획 및 주택건설사업 관련 내용(추후 변경 포함)에 따라 단지 내·외부 여건이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이후에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가 속한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아파트 주변으로 종합의료시설 및 부대시설(장례시설 등), 근린공원, 지하 저류시설, 초등학교,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장,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세차장), 운동시설, 방송통신시설(데이터센터 등), 문화 및 집회시설, 발전시설, 기숙사,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종교시설, 창고시설, 관광휴게시설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가 속한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종합병원 유치 및 메디컬클러스터 조성 계획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및 제반 여건 등 검토 후 추진될 예정이나, 현재 구체적인 일정이나 세부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사업 여건 및 관계 기관 검토 결과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의 진행 여부, 시기 및 규모 등이 변경되거나 추진이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의 확정 사항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종합병원 등 관련 시설의 유치 여부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가 속한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외의 도시계획시설이 준공 및 기부채납 된 이후에 입주가 가능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시설 준공 또는 기부채납 지연으로 인해 입주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학교, 도로, 공원·녹지, 상하수도, 가스·전기 등 사업부지 외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은 인·허가 협의 시 일부 변경, 지연될 수 있고,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홍보물 및 모형에 표시된 각종 시설(학교, 도로, 주차장, 공원·녹지, 공공공지, 기타 공공시설 등)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허가관청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 지연될 수 있습니다.
	사업지 및 도로, 단지 주변 현황	• 본 단지 북측으로 도로(심학산로)가 인접해 있어, 차량 통행에 따른 소음, 먼지, 진동, 야간 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남측에는 심학산 파크골프장이 인접해 있어, 해당 시설 이용에 따른 소음 발생 및 일부 세대에서 사생활 침해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 충분히 고려하시여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와 인접한 도로로 인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을 인지하고 청약 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및 인·허가관청에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구 내·외의 도로, 상·하수도, 공원, 녹지 등 각종 기반시설의 설치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가 및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입주 후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북측 수변공원 하부에는 중계펌프장이, 단지 서측 근린공원 하부에는 저류조가 조성될 예정으로, 이에 따라 조망 저해, 생활 소음, 악취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조감도, 단지 모형도, 단지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 도로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 바랍니다. • 사업부지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도로 등의 교통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녹지대 등을 확보하여 소음 저감을 도모하였으며, 필요시 방음벽 등 별도의 방음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대지 인근 외부 도로의 경사도 및 도시계획도로의 레벨 조정 등에 따라 본 건물의 레벨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원활한 도로 경사도 및 접속을 위하여 사업지 지반 레벨(계획)이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녹지 등)과 인접한 부지 특성상 고저차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지구경계를 통한 직접 접근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단지 내·외 산책로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의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구 내 도로 및 녹지 등의 상부에는 도시기반시설인 전력 지중화용 지상기기, 전주, 가로등, 신호등 등 노상시설물, 소화전 및 도로교통 안내표지판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이설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전 단지 여건(기반시설 위치, 분묘, 폐기물처리시설, 송전탑 등 혐오시설 유무, 주변 개발현황, 소음, 조망, 일조 등 단지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각종 홍보물 및 모형과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단지 주변현황을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 서측으로 근린공원 및 구내도로가 위치하고 있으며, 도로 건너편에는 혁신의료연구단지 및 국립암센터 미래혁신센터, 바이오융복합단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추후 주변 아파트 단지 및 도시개발구역 내 준주거시설용지, 자족용지(혁신의료연구단지, 바이오융복합단지), 의료시설용지(종합병원) 등에서 진행되는 공사로 인해 소음, 진동, 분진, 생활 여건 시설 미비, 공사 차량의 통행 등으로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구 서측 심학산에는 군사시설(방공진지)이 위치하고 있으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 규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작전성 검토 협의 결과, 군 작전시설이 본 단지 주변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외(심학산로, 수변공원 및 근린공원, 경관녹지, 종합병원, 자족용지 등)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 대지 인접도로에 의한 차량 및 보행자 소음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의 대지 경계선 주위 개발계획(조경, 토목, 기타 구조물 등의 계획 일체)은 주변 환경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승인 변경이 수반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설계변경 시 개별동의를 받지 아니합니다.
	학교	• 본 아파트의 초등학생은 2029년 3월 개교 예정인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구역 내 (가칭)서패초등학교 개교 후 배치 예정이며, 중학생은 교하·운정중학군(교하중, 두일중, 심학중, (가칭)운정5중, (가칭)운정3중) 배치 예정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선지망 후추첨 방식으로 배정됨에 따라 인근 중학교로 진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학군은 추후 (가칭)운정3중 설립 여부 및 개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 고등학교의 경우 파주시는 비평준화 지역으로 각 고등학교에서 정원 및 결원의 범위 내에서 선발권과 전학업무를 관할하고 있으며, 학교별 정현원 현황 및 학생, 학부모 선택에 따라 타 시군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 지구 내 초·중·고등학교는 도시개발계획(개발 및 실시계획)의 인·허가 변경, 학교설립 관련 법령·지침 변경, 블록별 입주시기, 공동주택 규모, 학생수용여건, 학생배치계획 등에 따라 학교설립(개교)시기 및 학교설립 대상교가 조정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학교설립계획 및 학생 수용계획 등은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파주교육지원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단지 계획**	<설계> • 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기능/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건축법」, 「주택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 변경은 사전에 통지하거나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 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및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탑승 위치 및 형태 등) 등은 사업계획(변경) 승인도서에 준하지만, 인·허가 과정 및 현장 여건을 고려해서 입주민 동의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 및 시공 여건에 따라 단지 내 조경 식재 수종 및 식재 위치, 시설물 위치 및 종류, 수량, 포장 패턴 및 재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 출입구 경비실의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공사 중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보행 동선상에 설치되는 계단, 장애인 램프 등의 배치 및 형태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보관소는 법 또는 사업승인 조건을 충족하는 수량을 설치하며, 설치 위치, 개소 및 규모는 인·허가 과정 및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미술작품은 인·허가 관청의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크기, 수량 등은 심의과정에 따라 결정되며 이에 따라 일부 조경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도로 및 인접 대지경계에 석축 또는 옹벽이 형성될 수 있으며, 석축 또는 옹벽의 형태 및 재질, 높이 등은 인·허가 과정 및 실시공시 현장의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와 외부도로 사이의 경계는 인·허가 관청의 지침 및 시공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의 분양 모형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실, 지하주차장, 경비실 등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과 펌프실, 전기실은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준공 시 소음 측정에 따라 대지경계 또는 녹지의 경계 등에 방음벽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저층부 일부 세대는 조망권, 일조권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 내 문화재로 의심되는 유물 등이 발견될 시 지하구조물 및 토목 옹벽 등의 위치 및 형상 등이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이후 계약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 지역 내 및 그 외 타 지역의 타사 또는 시공사 분양 아파트의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 사양 및 부대편의 시설, 조경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위치 및 통행 동선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의 배치현황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출입구, 부대복리시설, 단지 내 상가, 주차 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으로 인해 인근 해당 동 및 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의 배치상 일부 동의 저층 세대 및 특정 세대는 일조권의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세대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내에 비치된 단지모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고 가로등 및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상 펌프실, 전기실, 급·배기구, D.A(채광, 환기, 방습 등을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연결한 통풍구), 천창, 생활폐기물 보관소 인접 세대는 소음,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동 석종은 특성에 따라 시공 시 컬러가 일부 모형, CG 이미지와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단지 내 위치, 층수, 주변 시설물 등에 의하여 세대 시야 간섭, 일조량, 소음, 에너지소비량, 단열성능 등의 주거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의 모형 및 기타 분양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지하 출입구와 지하 엘리베이터 홀의 형태는 동별, 호수별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전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기 바랍니다. • 단지 배치 및 창호 형태 상 이삿짐 사다리차의 진입 및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지하 PIT 층은 지반 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및 기타 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는 입주 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될 수 없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및 내부 형태,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도로에 설치되는 교통시설물 및 차로와 차선의 운영방법 및 차량의 동선 방향 등은 추후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 비상차로는 비상용 차량의 통행을 위한 것이며,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 차량의 정차 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건축물의 측벽에 낙뢰 예방을 위한 측뢰 피뢰침이 시공될 수 있으며,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붕층 또는 옥탑 층에 의장용 구조물, TV 안테나, 경관조명, 피뢰침, 이동통신 중계기, 태양광 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용부의 배관 및 배선 설치공간 확보를 위해 일부 PD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1층 필로티 및 통로 계획이 인·허가 과정,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1층 필로티 및 동출입구 입면, 난간턱, 디자인 등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추후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아파트의 경우 설비공간 확보를 위해 1층 상부에 PIT공간이 계획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외부계단의 형상 및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동 저층부는 석재 및 몰딩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주 형태, 위치, 마감재, 컬러 등이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성과도서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선형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사전에 통지하거나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 시 추가 지질조사 및 현장 여건 등에 따라 가시설 및 구조방식, 기초의 형식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모든 시설물(건축, 조경, 설비, 전기 등)의 위치, 규모, 외관 및 색채, 단지명칭, 동표시 등은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 분야별 도서 또는 홍보물 상호간 오류로 인하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세부도서 작업) 과정에서 인·허가 도서의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품질 제고를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시행자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시행자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열재 사양 및 공용부, 부대복리시설, 필로티 계획 등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월패드, 스위치, 콘센트 등은 현장 여건에 의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욕실, 다용도실, 발코니 등에 설치되는 바닥 배수구, 수전, 우수 선홈통, 보일러 등은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창, 제연용 그릴창, 옥외 계단, 옥외 경사로 및 지하층에 설치되는 펌프실, 전기실, 저수조, 휀룸 등은 본 시공 시 위치 및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제 시공 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 자연지반면적, 인공지반 녹지면적 등은 축소 또는 증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조경(식재, 시설물, 공간계획, 수경시설, 포장 등)은 설계변경(위치, 규모, 형태, 마감재 등)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저층부는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 등의 설치로 인한 일부 일조, 조망 침해 등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바랍니다. • 아파트 1층 로비, 필로티 평·입면 계획(지하층 로비/복도 포함) 등은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최초 모형에 반영된 아파트 1층 출입구는(지상 정상주동 출입구, 필로티 진입 출입구) 주변 조경, 보행도로 등 시공계획에 따라 모양과 형태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D.A 위치, TOP LIGHT, 쓰레기 분리수거함, 자전거 보관대의 위치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관련 법령의 변경, 공사 여건 또는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 출입구의 장애인용 경사로, 단지 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산책로, 지하주차장 경사로 등), 어린이집, 조경시설(수공간 등), 주민운동시설 및 어린이놀이터, 자전거 보관소, 지하주차장 주차램프, 단지 주출입구 등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빛공해 및 분진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 단차 구간에는 조경석 쌓기 또는 옹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는 추후 인·허가 조건, 미관 및 구조물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치장석재, 벽돌 및 필로티 마감은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에는 필로티가 설치되며, 필로티의 층고는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를 제외한 보행자 전용 통로는 개방형으로 시공될 예정이므로 외부인의 통행을 제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단지와 외부 도로 사이의 경계담장은 행정관청의 지침 또는 인근 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 여부, 설치 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배치도 상에 표현된 D.A의 위치, 수량 및 크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D.A는 건물에 매립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공간에는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발전기 연도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이 단지 내 통행로 등에 인접할 경우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각 동 1층 인근 및 필로티 내에는 제연 휀룸의 그릴창이 설치되어 작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전용면적 천장 내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가스배관 등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전기, 통신, 맨홀 등의 인입위치 및 오수 배관의 위치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펌프실, 전기실 등은 본 공사 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 펌프실, 전기실, 지하주차장 등의 급배기용 D.A가 지상에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시설과 인접한 세대는 미관저해 및 소음,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지붕 및 지하시설물의 환기·채광을 위한 시설물(외부계단, Top Light, 제연팬룸, D.A)과 인접한 저층 세대는 소음 및 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운행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에 따른 소음 및 진동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펌프실, 팬룸 및 이와 유사한 기계설비 장치가 설치되는 공간에 인접한 세대 및 공간에서는 장비 작동에 따른 소음 및 진동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 등> • 본 아파트는 개별난방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 세대창고는 지하층에 설치될 예정이며, 구획, 형태, 면적, 개수 및 각 세대창고별 크기는 인·허가 및 실제 시공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무인 택배함의 설치 위치는 단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택배 차량으로 인해 불편함이 따를 수 있으며, 무인택배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 본 아파트 단지내 및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 프라이버시가 불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CCTV는 본 공사 시 기능과 감시범위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CCTV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경관조명, 공용조명, 단지홍보용 사인물 등 단지에 포함된 조명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운영/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 우·오수 배수시설, 저수조, 빗물저수조, 펌프실, 전기실 등 입주 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 상부에는 공용부 전기 생산을 위한 태양관 집광판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시설은 동 배치 및 일조량에 따라 일부 동 혹은 전체 동에 분산 설치될 수 있으며, 구조물에 의해 설치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붕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설비 시설물 설치계획이 인·허가 과정 및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태양광설비의 위치는 실시공시 옥상구조물에 의한 간섭 및 발전효율을 고려하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계획된 부대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커뮤니티시설, 어린이집 등) 및 산책로 설치로 인해 (이용)소음 발생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계획된 부대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커뮤니티시설, 어린이집 등) 및 산책로 설치로 인해 일부 아파트 세대의 실내가 외부에서 투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시고 청약 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옥상 장식물 및 옥탑구조물은 현장 여건에 따라 PC, DECK 또는 철골 구조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탑층 및 옥상에는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배관, 연도, 고가수조, 경관조명, 위성안테나, 공청안테나, 태양광 집광판, 이동통신 중계기, 항공장애등, 피뢰침, 군 관련 구조물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진동, 사생활 침해, 조명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영향 및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각 동별 1개소로 총 25개소 설치 예정이며, 인허가 및 실제 시공 시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 및 개소 수가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에 쓰레기 야적장, 분리수거장, 재활용 보관소 등이 설치되며, 쓰레기 수거 차량의 상시 접근에 따라 냄새, 소음, 분진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민원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쓰레기(음식물, 폐기물 및 재활용 등) 분리수거시설 등과 인접하는 세대는 악취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쓰레기 수거 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소방법에 의한 소화용 고가수조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전·후면에는 소방법에 따른 공기안전매트 설치 등 소방활동 공간이 필요한 관계로 식재 등에 따른 프라이버시 확보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니,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 전 반드시 단지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화조 설치 구역에 따른 정화조 배기탑이 동 옥탑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 지역 가스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한 일부 세대의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 침해 및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는 발전기 및 지하시설물 환기용 급·배기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는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이에 따른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옥상층 오·배수 벤트로 인해 주변의 일부 세대에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세대 점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정동 확인사항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등에 의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에 따라 202동, 203동, 204동, 206동, 207동, 208동, 211동, 213동, 215동, 216동, 219동, 222동, 225동 옥상에 옥외안테나 및 중계장치가 설치되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되거나 이동통신사업자의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추가 설치될 수도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 규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작전성 검토 협의 결과, 군 작전시설이 216동, 221동, 223동, 225동 옥상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 202동, 222동, 223동 저층 세대의 경우 문주 설치로 인한 조망권·일조권·조명 등에 따른 환경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 전에 견본주택의 모형 등을 통해 문주의 위치 등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동(201, 207, 210, 212, 213, 216, 219, 222, 223, 224동)에 인접하여 외부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인접 세대는 소음 및 조망 간섭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 전 단지 모형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부대시설에 인접한 세대는 해당 시설 이용 및 부속시설(에어컨 실외기, 배기팬, 설비시설, 쓰레기 수거시설, 옥외 엘리베이터 등)로 인해 일부 세대에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203, 206, 210, 213동)에 인접하여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인접 세대는 소음 및 조망 간섭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 단지 모형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동(202, 210, 211, 215, 216, 223, 224동)에 인접하여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되어 설치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인접 세대는 소음 및 조망 간섭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 단지 모형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동, 206동, 207동, 210동, 219동, 222동, 223동 1층을 포함한 저층부 세대는 주차램프 구조물에 의해 시야간섭, 소음, 빛공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충분히 숙지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외관 계획	• 옥탑, 지붕,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높이 등) 등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동 세대 외벽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아파트 외벽의 문양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저층부는 석재 및 몰딩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외부 옥상구조물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상난간 구간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 구간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면색채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투시도 등에 표현된 아파트 입면에는 실제 시공 시 줄눈 또는 문양이 형성 및 조정되는 등 세부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 입면계획에 의해 장식물 등이 세대 외벽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외벽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저층부 세대 일부 창호 폭이 줄어들거나 창호가 이동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 창호의 디자인 및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정면, 배면, 측면, 코어에 대한 줄눈 계획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 차량출입구 및 램프캐노피 형태, 마감재 컬러 등은 사업시행인가 변경 또는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선큰 포함), 근린생활시설은 실시공시 입면, 디자인, 창호 형태/크기, 줄눈, 시공 디테일, 마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주 형태, 위치, 마감재, 컬러 등이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동 색채, 석종은 특성에 따라 시공시 컬러가 일부 모형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이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의 내용, 옥외 광고 심의에 따라 사인물 위치 및 디자인, 단지 명칭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 엘리베이터, 외부 계단, 선큰위치/디자인/출입방향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펌프실 사이즈의 변경으로 코어 상부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건물의 외관 디자인(색채, 줄눈 계획, 입면 패턴, 마감재, 옥상 구조물 등), 공용부 디자인(동 출입구, 지하층 출입구, 필로티, 캐노피, 주차장 램프, 경비실, 부대시설 등), 외부시설물(문주, D.A, 자전거 보관소, 쓰레기보관소 등), 조경 디자인, 로고(BI)의 위치 및 내용, 난간 형태, 용벽 디자인 등은 설계 및 인·허가 과정 및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시공사의 고유한 업무 영역으로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단지 저층부는 석재, 벽돌, 타일, 금속, 석재 뿜칠 등으로 마감되며, 주동 형태에 따라 석재 및 페인트 등 기타 자재의 적용 비율은 각 동별로 상이할 수 있고, 인·허가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문주는 진입공간 배치 현황 및 현장 여건에 따라 형태, 크기, 배치가 결정되며, 디자인, 색채, 재료 등은 변경될 수 있고, 문주 설치로 인해 인접 세대에서는 조망권, 일조권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문주에 설치된 조명 및 빛의 산란으로 인한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 동의 옥상 및 옥탑에는 대형 옥상구조물과 경관조명이 설치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인접 세대는 조망권 및 일조권 침해, 조명에 의한 환경권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체결 전 견본주택의 모형 및 세대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동 측벽에는 금속 마감 및 조명이 설치될 수 있고, 그 위치와 디자인, 재료, 색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동에서는 빛 반사로 인한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부 마감재의 사양 및 디자인은 단지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본 아파트의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에 대해 타사 또는 시공사의 다른 단지와 비교하여 추가 설치나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비교·검토한 후 청약 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옥상 및 외벽에는 경관조명, 조형물, 로고(BI) 등이 설치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일부 세대의 일조,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LED 조명에 의해 인접 세대는 빛 반사로 인한 눈부심 및 소음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에 적용된 외관 특화, 입면, 색채 및 마감재 등 디자인 일체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가 발생하거나 마감 수준이 저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또는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공용 시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커뮤니티시설 등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은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의 규모 및 배치 형태, 내부구조, 입면, 층고, 천장고 등의 건축계획과 마감재, 가구 및 집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기본 마감만 제공되며, 그 외 시설 운영을 위한 내부 집기류(이동가구, 가전, 소모집기, 비품, 서적, 스탠드 등)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사에서 시공하므로 제공되는 집기 및 마감재 등이 변동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은 각 운영주체에 따라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유지·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 관리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일부인 카페테리아(조식) 또한 조식서비스가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의 운영에 대해서는 향후 입주자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제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민의 입주지원 및 하자 보수를 위해 일정 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단지에 설치되어지는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입주 후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됩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자들의 결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설치 유무 및 설치 개소의 차이가 있으니 분양홍보물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대복리시설 상부에는 옥상녹화가 계획되어 있으며, 일부 구역은 군사시설도 적용되어 있어 개인적인 접근 및 이용이 불가합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외관 및 색상, 재료 등은 시공 중 경미한 범위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내·외부 디자인, 창호 사양 및 규격은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평면 계획은 인테리어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내부 레이아웃, 외부 디자인은 인·허가 과정 또는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실 배치, 입면, 평면, 단면, 창호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에어컨 실외기 및 환기 시스템 등으로 인해 인접한 일부 세대의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난방 및 급탕을 위한 보일러 연도가 외부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인접 세대는 조망권, 소음, 진동, 열기, 사생활 침해 등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등 부대복리시설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차장	• 단지 특성상 지하주차장은 지하 1층부터 지하 2층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구획별로 주거동 연결통로의 길이와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하 1층 주차장의 진입 및 주행 유효 높이는 2.7m로, 소형 택배차는 진입 가능하나 사다리차, 대형차, 대형 택배차 등의 진입은 불가합니다. • 지하 2층의 일부 주차구간은 천장고 2.3m가 확보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 후 청약 및 계약 체결 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을 위한 주차램프의 지붕 구조물에 의해 일부 세대는 소음 및 매연, 조망권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지하구조물은 관계기관의 요청 등에 따라 인·허가 단계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계획은 관계 기관의 요청이나 추가 인·허가 과정에 따른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주차구획의 배치, 주차 대수, 바닥 레벨, 층고, 천장고 등 건축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 검토 결과에 따라 기둥, 보, 벽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주민공동시설 내 기둥이 추가되거나 공간 계획 및 인테리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착공신고 후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등으로 인하여 견본주택에 비치된 도서상의 주차계획과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어떠한 민원이나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옥내소화전 배치로 인해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에서는 차량 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설비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차량의 진·출입이 이루어지는 출입구 및 차도와 지상 주차장에 인접 배치되어 있는 동의 저층 세대는 차량의 불빛, 소음 등으로 인해 환경권 및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 시스템은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정화조/빗물저류조 등 관리시설의 출입문, 점검사다리 설치로 인해 일부 주차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급배기 휀룸/제연휀룸의 설치로 인해 일부 주차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련 계획에 따라 일부 주차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는 RC구조와 PC구조가 혼합되어 있으며 그 범위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는 PC 또는 DECK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적용 범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일부 구간에서는 교차로가 형성되어,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주차대수 최대확보를 위하여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동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해당세대에 주차 후 이동거리 증가, 근접한 주차면 부족 등으로 불편할 수 있으나, 이는 설계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	•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등의 비주거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외관 및 내부 건축계획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내부 레이아웃, 외부 디자인은 인·허가 과정 또는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실 배치, 입면, 평면, 단면, 창호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분양 시점에 따라 MD계획이 미확정될 수 있으며, 향후 MD계획 확정에 따라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용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지하주차장 내에 설치되며, 이로 인해 냄새,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쓰레기 수거 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접 세대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용 저수조, 고가수조, 탈취설비, 실외기, 연도 및 각종 장비류로 인해 인근 동에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부속시설에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로 인해 주변 인접 동에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크기 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영업을 위한 차량 등이 단지 주출입구를 통해 출입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차구획은 아파트 주차구획과 분리되어 있으나, 주출입구는 아파트와 공동으로 이용됩니다. • 근린생활시설용 에어컨 실외기 및 환기 시스템 등으로 인해 인접한 일부 세대의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1, 2의 지하주차장 출입구와 근린생활시설 3의 지상주차장 출입구는 주 출입구는 동일하나 아파트 차량출입구와는 별도의 동선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4 이용자는 근린생활시설 1, 2 상가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용 실외기가 외부 또는 옥상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 세대나 공간에서 미관 저해 및 소음, 환경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면적, 위치, 층수, 용도 및 세부 계획 등은 인허가 협의, 분양 여건, 수요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위 세대	**설계 및 마감**	<마감> • 천연석, 인조석 및 엔지니어드스톤은 본 공사 시 이음매가 보일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가구에 적용된 도장 제품은 설치 후 시간 경과 시 황변 및 표면의 평활도가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 대비 도막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 폭이 모델하우스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장식장 내부에서 전열기구 사용시 가구변형 및 화재위험이 있으므로 내부에서 전열 가전제품 사용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방 벽, 거실 아트월, 욕실, 주방, 발코니 등에 설치되는 타일은 패턴이 규칙적이지 않고 랜덤하게 설치되며 색상, 줄눈나누기 및 간격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이는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거실아트월 옵션선택 시 적용되는 타일은 대형타일로, 파손시 교체가 어렵거나, 문양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세대별 옵션 선택에 따른 조명기구, 배선기구 및 기타 기구의 위치, 타입, 수량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내 설치되는 가구 및 마감재 판넬 이음부위의 위치와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타일 및 인조석, 천연석 등의 나누기 및 줄눈 두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석재 자재(천연석, 인조석 등)는 자재의 특성상 나누기 줄눈이 생기며, 이음 부위가 육안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 타일 및 석재 자재의 나누기와 줄눈의 재질 및 색상은 디자인 및 시공성 개선을 위해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재 내역은 주택형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견본주택, 팜플렛 등을 참조 바랍니다. • 바닥에 사용되는 마루 자재는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는 실제 또는 제품 간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바닥재인 강마루의 구성 부재 중 심재의 재료는 내수 합판 또는 고밀도 섬유판이 사용되며, 자재의 특성상 스팀 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에 취약하므로, 부주의에 따른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색, 변형, 비틀림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의 최종 마감재로 가려지는 천장 및 가구 뒷면 및 바닥과 욕실의 욕조의 바닥과 뒷면, 세면대 뒷면 등에는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입주기준 최종 마감재로 설치된 설비, 소방, 환기, 가스, 위생, 마감기구, 오·배수 등의 부분에 대해 입주자의 요청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및 형태는 천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천장 몰딩의 재질 및 형태, 천장 마감 사양 등은 시공성 개선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물천장과 걸레받이는 본 공사 시 하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PVC 위 래핑 또는 도장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확장 부위 벽체 등 내부 단열재는 마감 두께 확보 및 품질 향상을 위해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가구 및 벽체 마감 등은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위해 일부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바닥, 벽, 천장 부분에 가구류(신발장, 붙박이장, 화장대, 주방가구, 욕실가구, 거울 등)의 설치로 인하여 노출되지 않는 부위의 벽, 바닥, 천장의 최종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견본주택은 기본으로 설치되는 마감재 이외에도 별도 전시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 시 설비 배관 구성에 따라 거실 우물천장의 크기 및 형태,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 평형 현관, 주방가구 하부, 냉장고장 하부, 샤워부스, 욕조 하부에는 바닥 난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 타입별로 드레스룸 및 팬트리 내부 구성과 붙박이장의 위치, 구성, 크기가 상이합니다. (붙박이장의 위치는 동일 타입 내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및 팬트리의 시스템 선반은 해당 실의 창호 및 커튼 박스 유무, 또는 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선반의 형태와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타입별 주방가구 내부 구성, 도어 열림 방식, 코너 선반 및 악세서리 제공 여부, 키 큰장 크기, 하드웨어 사양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장치는 본 공사 시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덕트가 설치됩니다. (덕트 노출을 가리기 위해 해당 타입 침실 커튼박스 폭이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방화문은 본 공사 시 방화성능향상 및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현관문 및 피난 공간,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방화문은 결로 등 성능 향상을 위해 재질 및 두께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일부 세대 현관문에는 엘리베이터 홀 내부 압력 확인을 위한 차압 측정공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일반 스탠딩형 냉장고 설치 시 주방가구보다 냉장고 전면이 다소 돌출되어 주방 동선에 간섭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목창호 문틀 및 가구 등에 타커 자국이 보일 수 있으며, 이는 하자가 아닙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손끼임 방지 장치는 본 공사 시 동질, 동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제조사, 색상, 디테일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보일러는 동등 혹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스 배관 위치는 본 공사 시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주방가구 상부장 깊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주택의 주택형별 단위 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저층부 외벽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저층부 세대 일부 창호 폭이 줄어들거나 창호가 이동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 창호의 디자인 및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세대 내 주방가구는 유상 옵션형으로 설치되었으며, 기본형은 주방가구 배치가 변경되고, 설치 수납 가구가 상이합니다. • 본 공사 시 석재류, 타일류 나누기 및 단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방, 아트월, 욕실, 발코니 등) • 세대 내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이 넘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고,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해 신발 걸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하자가 아닙니다.

		• 외벽 및 세대 간 벽 등 단열 설치 부위의 결로 발생으로 인한 하자방지를 위하여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부분적으로 벽체 구성 및 마감의 바탕이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위 세대 내부 벽체 재질은 공사 중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위 세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로 설치되며, 중량물 설치나 못 박음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벽체의 파손 또는 설치된 중량물의 탈락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 처리, 단열재 및 결로 방지 단열재 설치 등을 위해 골조 일부가 이격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골조와 조적벽체 등 이질 재료가 접하는 부분에는 크랙 방지 및 문틀 케이싱 설치를 위해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가구 등이 높이, 폭 등의 차이로 인하여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생활 가구류(침대, 책상, 책장, 소파 등), 생활 가전류(세탁기, 건조기, 밥솥, TV, 식기세척기, 기타 주방 및 침실 소형가전 등), 침장 및 커튼류, 그림 액자, 인테리어 소품 등은 연출용이며,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외부 창호와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 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본 공사 시 업체,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협력업체 계약 및 외부 입면 계획에 따라 디자인, 프레임 사이즈, 유리 사양, 핸들, 외장재,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외부 창호에 설치되는 유리는 동등 혹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일반 가구 선반의 배치는 좌우 세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다용도실 출입문의 재질과 형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방> •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예정이므로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주방 상부장에 자동식소화기 설비 및 가스배관이 설치되며, 내부 수납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 주방 상부장에서 천장 마감 사이에 덕트 및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한 가림막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싱크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및 배관 설치로 실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할 수 있으며, 개폐시 바닥이 일부 보일 수 있습니다. •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배기 덕트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주방배기, 화장실배기는 세대별 직접배기방식으로 외부에 배기캡이 설치됩니다. (단, 건축평면구조상 직접배기방식이 불가능한 평형은 공동배기방식으로 타평형과 배기성능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확장하지 않은 일부 발코니 천장에는 세대 타입에 따라 발코니 내부에 상부 및 하부세대용 우수, 배수 입상배관 및 가스배관 등이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 배관은 캡(플러그)마감되며, 별도로 가스기기와의 연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가스기기(가스렌지 등)와 도시가스배관의 연결(별도 수수료 발생)은 해당 지역 도시가스 서비스지역 고객센터(관할 지자체 및 구청 문의)로 별도 신청하여야 합니다. • 가스쿡탑 설치시 가스차단기, 전기쿡탑 및 전기+가스쿡탑(하이브리드) 설치시 가스, 전기차단기가 설치되며, 추가 설치 및 변경 설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쿡탑 옵션 선택 시, 옵션가격은 기본제품 사양에서 미설치되는 품목에 대해 감액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 주방가구 하부, 냉장고장 하부에는 바닥 난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주방인터넷TV의 UI 및 기능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방인터넷TV는 WIFI 전용 모델로 세대 내 무선인터넷 환경은 입주민이 개별 구축하여야 합니다. • 주방가구 개수대 하부에 설치되는 온수분배기는 본 공사 시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온수분배기 설치로 인해 해당 부분 주방가구 깊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키큰장은 냉장고장의 선택과 가전 유상 옵션에 따라, 형태 및 구성이 상이합니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렌지후드 작동 시 실내공기가 외부로 배출되어 순간적인 음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설비의 정상 작동에 따른 현상이며, 급기 확보(창문 개방 또는 환기장치 가동) 시 실내 압력이 균형을 이루어 정상 상태로 안정화됩니다. <에어컨> • 에어컨 설치 및 사용 시 응축수 배수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거실의 에어컨 응축수 배관은 하부에(스탠드타입 에어컨 기준), 안방에어컨 응축수 배관은 상부에(벽걸이타입 에어컨 기준) 설치되므로, 에어컨 설치 방식에 따라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거실과 안방 이외의 실에 에어컨 설치 시 입주자 부담으로 에어컨배관을 별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세대 내에는 냉매배관이 2개소(거실+안방) 설치됩니다. (에어컨 옵션 선택 세대 제외)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옵션행사 시점에 별도로 문의바랍니다. <화장실> • 화장실 천장에 설치되는 점검구 및 소제구의 크기와 설치 위치는 타입별, 층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욕실 하부에 설비기기(급수급탕분배기)가 설치되며, 실제 시공 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하층은 경우에 따라 욕실 상부에 설비기기(급수급탕분배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펜트하우스는 층상배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샤워부스(샤워수전 설치 공간) 내 코너선반이 1개소 설치됩니다. • 샤워부스, 욕조 하부에는 바닥 난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부 욕실의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준공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 출입 시 욕실문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 세대 내 공기질 감지센서(무선AP일체형)는 발코니확장 시 기본설치 품목입니다. • 세대 외부창은 발코니 구조나 형태에 따라 창호 크기나 사양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저층 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가 다소 축소·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 여건 및 입주자 사용성 개선을 위해 목문의 사양(크기, 재질, 개폐 방향, 디자인, 색상, 하드웨어 등) 및 창호 주변 벽체 길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욕실 출입문은 본 공사 시 ABS 도어로 시공됩니다. • 보일러 설치로 인해 다용도실 창호 일부가 고정되어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타입별로 창호 높이 및 천장의 형태와 높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 세대 외창 및 실외기실 루버에는 방충망이 설치되며, 형태 및 재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에 설치되는 방충망의 형태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실, 침실 및 침실 앞 비확장 발코니 외부 창호는 유리난간 타입으로, 이삿짐 차량을 이용한 운반 시 파손 방지를 위한 보양 조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펜트하우스 단위 세대의 옥외공간은 설계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공용공간으로, 타 세대의 출입은 불가하나 해당 세대의 전용공간이 아니므로 공용설비 및 시설물 유지 등을 위해 진입이 요구될 경우 개방하여야 하며, 등기를 포함한 재산권 행사는 불가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준용) • 최상층 테라스 공간에는 통기 배관 및 연도가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조망권, 소음·진동, 냄새,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펜트하우스 옥외공간 바닥은 콘크리트 마감 처리되며, 바닥 레벨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펜트하우스 테라스에 옥외용 수전이 설치된 경우, 겨울철 동파 방지를 위해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펜트하우스 옥외공간에는 우수 또는 배수 드레인이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그 수량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펜트하우스 옥외공간 진입을 위해 단위 세대 발코니 외부 창호에는 난간이 설치되지 않으며, 옥외공간 외곽에 난간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이때 난간의 재질, 색상, 높이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펜트하우스의 실외기실 출입문은 SD 도어로 계획되어 있으나, 결로하자 방지를 위하여 현장 여건 또는 설계 변경 등에 따라 문 개폐 방향이나 형태·재질·마감·사양·손잡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펜트하우스 세대의 외부 콘크리트 난간 및 철재난간 부위는 CG 이미지와 달리 동별 형태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모형 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준공 시 펜트하우스 입주자에게 인도하는 옥외공간의 기본 건축 마감(방수, 단열, 무근 콘크리트) 외에 입주자의 추가적인 시공(데크, 타일마감 등)에 따라 발생한 하자는 입주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입주자는 옥외공간 상부의 허용하중, 방수 및 배수 등 기본 설계 조건에 대해 전문가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시 인접 및 하부 세대에 사전 통보하고 동의를 받은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 펜트하우스 세대는 옥상 경관조명에 따른 빛 반사로 인한 눈부심 및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옥외공간에는 조경용 수전 및 배수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부위에서 물막힘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환기시스템, 욕실배기, 주방배기를 위해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에는 바닥 난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발코니 등	• 단위 세대는 발코니확장형을 고려한 설계로 비확장 선택 시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확장형 선택 시 인접 세대의 확장 유무에 따라 단열재 설치에 따른 이형 벽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는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에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 외부창호는 시공되지 않으며, 발코니로 나가는 문에는 일반 슬라이딩 이중창이 설치됩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외부 발코니가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각 실과 발코니가 만나는 면에만 창호가 설치되며, 발코니 외부 쪽에는 창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층 및 하층 세대의 단열 및 배수 설계로 인해 발코니의 천장고와 창호 높이가 축소 시공되며, 발코니 바닥 레벨이 거실 및 침실보다 높게 시공되어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에서 전체 발코니가 연결된 경우, 각 실이 아닌 거실 또는 주방 등 특정 실을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하여 생활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시 거실의 창호는 유리난간형 슬라이딩 이중창이 설치되며, 침실 등에는 견본주택에 설치된 것과 같이 일반 슬라이딩 이중창이 설치됩니다. 외부창호는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및 기술적인 검토로 디자인 및 세부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시, 아파트 외부 창호는 일부 세대의 발코니 장식물 부착 및 내풍압 구조검토에 따라 세대별·층수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 또는 축소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 방향, 날개 벽체 및 분할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확장 시 침실 분합문에는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확장 시 에어컨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도어는 실외기 간섭에 의해 개폐 방향이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시공 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전동빨래건조대 사용

		시 다소 간섭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부창 및 내부 창호의 사양(제조사, 브랜드, 디자인, 개구부 및 프레임 크기, 창틀, 하드웨어, 유리두께 등)은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나, 이 경우 동등급 이상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 세대 내 발코니 분합창 손잡이는 1개소만 설치됩니다. • 안방 발코니 및 주방 발코니에 설치된 배수배관으로 인한 배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 입주자가 설치한 세탁기 및 에어컨 실외기로 인하여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Trap) 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배기 덕트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세대의 발코니 또는 실외기실 천장에는 환기를 위한 전열교환기 및 덕트가 노출되어 설치되며, 사양 및 위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입상관, 배수드레인, 수전 등의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등에 의거 실외기실 및 다용도실, 발코니(발코니 미확장 세대 포함)에는 세대환기를 위한 장비 및 환기용 덕트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배관이 노출되거나 내부 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천장고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 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는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하며,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는 준외부 공간으로, 난방 설비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따라 결로 및 결빙으로 인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코니 외부 측벽 및 천장에는 최소한의 결로 방지를 위한 단열재 및 마감재가 추가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코니의 내부 폭 및 크기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세탁기 및 실외기 설치 공간 또는 수전이 설치된 발코니 등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환기시스템 설치 또는 시스템에어컨 선택에 따라 실외기실 또는 다용도실 천장에 덕트 및 배관 등이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되거나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고, 내부 마감(창호,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과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결로로 의한 하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 설치 세대(1~3층 세대, 필로티 상부 세대 제외)는 비상 시 하향식 피난구 사용을 위해 항시 실외기실 출입문을 항상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층간소음 및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시공사의 책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에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며, 화재시 덮개를 열고 사다리를 이용하여 아래층으로 피난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최하층 세대의 발코니에는 완강기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은 발코니에는 별도의 배수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드레인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욕실 바닥은 본 공사 시 구배시공으로 인하여 견본주택과 높이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홈통 위치와 개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확장 시 선홈통 배수관을 가리기 위해 벽체가 일부 돌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 인입 위치에 따라 다용도실 창의 위치가 좌우로 다소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그릴 창의 크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발코니 날개벽 길이, 창호.도어 위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시공된 사항과 달리 실외기실 측벽 벽체의 두께가 두꺼워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코니 면적이 축소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소방, 전기 및 설비	• 소방법에 의한 세대 스프링클러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커튼박스의 길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층 세대 하부에는 각 동의 제연을 위한 급기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는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소방 인·허가청의 요구 조건에 따라 3층부터 10층 구간의 침실 등 거주공간 내에 완강기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화재 등 비상 시에는 실외기실 내 설치된 하향식 피난구 또는 완강기를 통해 대피하여야 합니다. • 하향식 피난구는 화재시 대피를 위한 시설이므로 대피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건을 적치할 수 없습니다. • 평상시 하향식 피난구 덮개를 밟거나 덮개 위로 물이 넘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환기 장치 가동 시 운전소음이 발생하여 거실, 침실 내로 전달 될 수 있으며, 각 실내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 인입 위치에 따라 다용도실 창의 위치가 좌우로 다소 이동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세탁기실 및 발코니)의 바닥은 입주자가 설치한 세탁기의 배수로 인하여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주방 발코니 및 주방 또는 실외기실에 가스계량기 및 가스배관이 시공되며, 가스배관관경, 인입경로(위치)등은 도시가스 공급 측과 협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환기설비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됩니다. • 환기유니트는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 간 소음 발생량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 장치 가동 시 운전소음이 발생하여 거실, 침실내로 전달될 수 있으며,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열교환 환기장비에는 필터가 설치되며, 사용하는 정도에 따라 교환주기는 상이할 수 있으며, 입주자 부담입니다. • 세대 벽체 및 바닥 내부에는 전기/통신용 배관 및 각종 설비배관(급수, 온수, 난방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으로 인한 피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의 가스계량기 및 보일러 위치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그릴 창의 크기 및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급수계량기, 가스계량기 및 전기계량기는 원격 검침 방식이며, 세대 월패드로 표시된 검침량은 실제 검침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일부 세대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조명기구와 스위치는 직류전원(DC) 공급에 의해 동작하는 방식으로 조명기구와 스위치 간 UTP케이블로 연결되어 있어 시중에서 판매되는 교류전원(AC)용 조명기구와 스위치로의 교체가 불가하므로 계약자는 이 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세대 내 조명기구 및 스위치와 관련된 인테리어 공사 또는 하자보수 이슈 발생 시 반드시 해당 제조사에 문의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견본주택	**견본주택 등**	• 견본주택은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기본형 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창호 및 부속철물류, 가구(시스템 가구 포함) 및 가전류, 벽체 및 바닥재, 샤워부스, 터닝도어, 발코니 난간대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각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등으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마감자재는 자재 특성상 본 시공 시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실제 시공된 마감자재와 상이할 수 있으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합니다. • 내부 마감재(마루, 타일, 도배지, 석재 등)는 실제 시공 시 자재의 고유한 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연석으로 시공되어 있는 제품은 천연자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연적 패턴과 색상, 베인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고, 본 공사 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패턴, 색상, 베인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유상 옵션 품목은 제조사, 형태 및 마감재(하드웨어, 색상, 재질 등) 설치방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옵션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전기마감기구는 본 공사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 세대 옵션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 및 기타 기구 위치 타입, 수량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및 전시모형을 포함한 각종 홍보물의 가구 소품, 디스플레이,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단위 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 타입별, 옵션선택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모형, 마감재 보드, 인쇄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건립된 세대는 74형, 84A형, 113형이며, 평면 및 마감재의 유상 옵션이 적용되어 있으며, 계약자는 기본형/선택형 평면 및 마감재를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74형, 84A형, 113형은 유상 옵션형으로 건립되어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 전 기본형 및 선택형 평면도와 마감재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74형, 84A형, 113형 주방 상판 및 벽, 거실에 설치된 세라믹타일은 유상 옵션 품목입니다. 계약자는 계약 전 기본형 마감재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의 독점, 품절, 품귀, 생산 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불가피한 사유나 시공 여건, 신제품 출시 등의 사정에 따라 동급 또는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되지 않은 평형 및 타입은 분양 카탈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 평면 형태, 가구 배치, 실면적 등 견본주택에 설치된 주택형과 상이한 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시고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옵션품목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고, 옵션품목은 유상으로 추가 선택 시에만 설치되며, 계약 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본인 동·호수 지정 시 동일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견본주택은 일정 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임의로 폐쇄, 철거할 수 있으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일정 기간 촬영 보존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연출용 조명기구는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분전반, 통신단자함, 배선기구류, 월패드, 통합스위치, 스마트스위치, 주방인터넷TV, 욕실스피커폰, 디지털도어락, 현관카메라폰 등은 제품의 성능, 디자인 및 기능 개선을 위해 제품사양, 위치,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적용된, 세대 분전반 및 통신단자함 설치 위치 및 크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용으로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분양홍보물 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피트니스 등)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 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모형 및 홍보물 등에 표현된 장애인 점형 블록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팜플렛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 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분양신청 및 계약 체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비상조명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세대 시공과 무관하며, 실제 시공 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됩니다. • 견본주택 및 본 공사에 설치된 환기유니트, 환기디퓨져, 온도조절기, 선홈통, 바닥배수구, 위생기구, 욕실 악세사리의 수량,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 운영을 위한 것이며 본 공사 시 소방법규에 적법하게 설치됩니다. 실별 설치 위치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 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점검구 및 D/A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모형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옥탑부 형태, 주동 형태, 저층 석재, 창호 형태 및 색상, 측벽 디자인, 사인물 위치, 외부 색채, 벽체 마감, 외부 로고, 단지 식재, 포장계획, 층고 디테일, 방음벽 설치, 주차 게이트 형태, 특화 디자인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의 내용, 법령 변경, 시공 시 현장 여건,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홈 서비스	• IoT 연동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세대 내 무선인터넷 환경(인터넷이 가능한 어떤 사업자도 가능하며, 입주자 별도 가입 필요)이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각 세대에 IoT 서비스를 이용한 홈네트워크 기기제어(월패드 터치스크린 및 스마트폰용 홈네트워크 APP을 이용한 제어 범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를 제공하고, 이 서비스는 입주기간 종료 시부터 사용가능하며, IoT운영사의 플랫폼 운영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정책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는 중단될 수 있음을 공지합니다. 홈네트워크 서버 유지보수 비용은 준공 후 3년간 무상지원 됩니다. 단, IoT 및 기타 서비스 이용을 위한 단지내 홈네트워크 서버 인터넷회선비용은 준공 후 1년간 무상지원 됩니다. • 홈네트워크 단지서버는「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4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공사']에 해당하는 공용 정보통신설비로, 준공 후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준공일 익일부터 3년간은 정기점검, 장애복구 등을 포함한 유지보수가 무상으로 제공되며, IoT 및 기타 서비스 이용을 위한 단지 내 홈네트워크 서버단지 전용 인터넷 회선비용은 1년간 무상으로 지원됩니다. 무상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단지에서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이는「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제39조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법정 유지관리 의무사항에 해당합니다. • 스마트홈 IoT 가전제품 연동 제어 범위는 홈 IoT 서비스 제공사와 제휴된 가전제품에 한합니다. 제휴된 가전제품은 추후 홈 IoT 서비스 제공사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서비스 및 비대면진료 관련 (위탁업체 계약 체결 관련 사항)	• 주거서비스는 입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하여 전문 업체를 통한 위탁 운영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해당 서비스는 입주민 전용 앱(APP)을 통해 신청하며,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입주민의 신청에 의해 유상으로 제공됩니다. 단, 운영업체, 현장 여건, 이용률, 입주민 선호도 등에 따라 제공 서비스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공사는 주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위탁운영사인 ㈜에스엘플랫폼과 준공 이후 1년간 위탁계약을 체결하며, 이 기간 동안의 앱 플랫폼 구축 비용 및 기본 유지 비용(비서 서비스, 앱 플랫폼 유지보수 등)은 시공사에서 부담합니다. • 입주자는 주거서비스위탁계약기간(1년) 중에는 위탁업체의 변경을 임의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 종료 이후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위탁업체의 서비스 연장 여부 또는 재선정을 결정하며, 계약 연장 또는 재선정 후 발생하는 유지 비용(APP 유지보수비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 비대면진료서비스는 입주민이 전용 앱(APP)을 통해 간편하게 진료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해당 서비스는 위탁계약(3년)에 따라 제공되며, 입주민이 별도의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는 비대면진료서비스위탁계약기간(3년) 중에는 위탁업체의 변경을 임의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 종료 이후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위탁업체의 서비스 연장 여부 또는 재선정을 결정하며, 계약 연장 또는 재선정 후 발생하는 유지 비용(APP 유지보수비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 견본주택 및 홍보물에 표현된 서비스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실제 제공 서비스와는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 현장 및 견본주택 위치 안내

견본주택 위치도	비고
	■ **견본주택 :**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390 ■ **사업부지 :** 파주메디컬클러스터 도시개발구역 A2BL (경기도 파주시 서패동 432번지 일원) ■ **분양문의 : 1660-3255** ■ **홈페이지 : https://unjeong-iparkcity.com**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고,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